

| 2019 공동 심포지엄 |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

| 일시 | 2019년 9월 4일(수) 13:00~17:00

|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13:00-13:20	〈1부〉 개회식	사회: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김도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축 사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환영사 : 조 광(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li style="padding-left: 2em;">안병욱(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13:30-14:30	〈2부〉 강제동원 피해 실태와 자료	사회: 서종진(동북아역사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강제동원 현황과 거부투쟁 (노영종, 국가기록원) - 발표 : 조선총독부 자료를 통해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 토론 : 한혜인(성균관대) 황병주(국사편찬위원회) 	
14:45-15:45	〈3부〉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역사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일본의 전후처리와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인식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 발표 :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본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미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 토론 : 서호철(한국학중앙연구원) 조윤수(동북아역사재단) 	
16:00-17:00	〈4부〉 종합토론	사회: 정태현(고려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의 관련 연구 추진 상황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 등 - 발표·토론자, 김광재(국사편찬위원회) 등 	

개회사	6
김도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hr/>	
강제동원 현황과 거부투쟁	11
노영종(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자료를 통해 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45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토론문	
한혜인(성균관대)	57
황병주(국사편찬위원회)	63
<hr/>	
일본의 전후처리와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인식	69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국제인권법에 비추어본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미	89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토론문	
서호철(한국학중앙연구원)	105
조윤수(동북아역사재단)	107
<hr/>	

오늘 교육부 소속 3개의 역사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학술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국사편찬위원회 조광 위원장님,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병욱 원장님, 그리고 소속은 다르지만 일제의 식민지배의 참상과 강제동원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님,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좋은 발표를 맡아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현재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가장 나쁜 국면입니다. 일본이 한국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한 무역 분쟁이 안보 문제로까지 확산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갈등의 뿌리는 식민 지배를 둘러싼 역사 문제에 있습니다. 일본이 그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전체제 아래에서 맺어진 1965년 한일협약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과 배상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한일관계가 진전되면서 일본의 몇몇 총리는 식민지배 피해에 대해 한국이나 아시아를 향해 ‘사죄’하였으며, 일본군‘위안부’의 동원이나 운영에 일본국가, 군대가 관여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베총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인정했던 ‘개인 배상’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천명했던 자유무역원칙도 깨고 있습니다. 이런 아베의 역사인식은 단순히 한일관계를 헤칠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체제 구축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학술회의는 불법적, 반인도적 일본 식민지배 피해 실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쟁을 위해 강제동원’한 노동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살펴보고, 또한 한국대법원 판결의 의미까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밝혀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일은 지난 8월 초,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학술회의를 마련한 교육부 산하 3개 역사관련 기관은 각각의 고유한 업무가 있지만, 일제의 식민지배 실상을 살펴보는 일에는 힘을 합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을 중심으로 이런 작업들을 추진해 가면서, 더 나아가 일제의 강제동원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사업을 위해서 소속이 다른 국가기록원, 독립기념관과도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찾습니다.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자성하는 것이 올바른 미래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일본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자신들이 행했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의 잘못을 겸허한 자세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2019년 9월 4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도형

강제동원 현황과 거부투쟁

노영중(국가기록원)

강제동원 현황과 거부투쟁

노영중(국가기록원)

1. 머리말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¹⁾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리고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선언 등 한일관계는 역사를 넘어 경제·안보로 확대되어 惡化一路를 걷고 있다.

해방 이후 줄곧 일본 정부는 그들의 침략전쟁을 반성하기는커녕 조선인의 강제동원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며 합법성의 주장을 노골화 해가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역사적 事實이고 수많은 자료와 증언을 통해 史實임이 입증되고 있다.

일제는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총동원체제로 개편하고, 같은 해 5월 5일 조선에도 이를 적용하였다. 또한, 1941년 12월 진주만을 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킴으로써 戰線을 확대해 나갔다. 파시즘 독재체제 하의 일제는 그들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부족한 노동력을 식민지 조선에서 충당하고자 하였다. ‘경제적 수탈과 민족 말살’이라는 일관된 식민정책 하에서 추진된 조선인 강제동원은

1)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동원을 통칭하여 ‘강제징용’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동원의 범위를 자칫 일본 정부가 법적 강제였다고 주장하는 징용으로 한정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향후 강제모집, 관 주도, 징용 등을 포괄하는 용어인 ‘강제동원’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실제로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11월 1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을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아닌, 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로 부르고 있다.”라며 “당시 국가총동원법상 국가동원령에는 모집과 관 알선, 징용이 있었지만, 실제 이번 재판의 원고들은 모두 모집에 응했기 때문에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하였듯이 강제동원 방식을 ‘강제모집’, ‘관 주도’, 징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직적·강제적으로 수행되어 강제노동을 수반하였고, 皇民化教育을 통해 조선인의 日本人化를 의도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강제동원 방식과 실태 등 강제동원 현황과 조선인의 저항에 대해서 살펴려고 한다.

그동안 강제모집²⁾, 관 주도³⁾, 징용은 시기 순으로 적용되어 온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일제의 필요에 따라 강제동원 방식이 적용되었다. 또한, 조선인의 징용은 1944년이 되어야 실시되었다고 이해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1942~43년 시기에 도 상당수의 조선인이 징용되고 있었다.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조선인을 동원해 갔는가를 밝히려고 한다.

아울러 기업자료와 당시 강제동원되었던 분들의 증언을 통해 강제동원 조선인의 삶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인신 구속적 통제 상황 속에서 폭력이 일상화되었던 조선인의 삶을 추적하고 노동시간, 식사, 임금, 노동재해 등 당시의 노동환경이 어떠한가를 살필 것이다.

또한,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해 조선인이 어떻게 저항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인들의 강제동원 거부투쟁은 당시 전체주의적 독재국가, 파시즘체제였던 일제의 한 복판에서 행해진 것이었다. 때문에 반제반전운동, 나아가 항일 독립운동의 한 분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강제동원되는 과정에서는 물론 강제동원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감행된 조선인의 탈출 및 항쟁 사례를 밝힐 것이다.

2. 강제동원 방식

1) 강제모집

2) '모집'은 '사람이나 작품, 물품 따위를 일정한 조건 아래 널리 알려 뽑아 모음'이란 뜻으로, 일제가 조선인을 동원하면서 자율성이 내포되었음을 교묘하게 포장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서, 본고에서는 강제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강제모집'으로 표현한다.

3) '알선'은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을 뜻하는데, 일제가 조선인 동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교묘하게 의도하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관알선'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일제와 조선총독부가 직접적으로 조선인 동원에 개입하고 주도했음을 드러내기 위해 '관 주도'로 표현한다.

일제는 1938년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하여 노무동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선인의 인력 동원을 포함하였다. 일제는 이미 노무동원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조선인의 인력 동원을 계획하였던 것이다.

강제모집은 일본 기업의 모집원이 조선총독부가 할당한 지역에 직접 가서 인솔해 가는 강제동원 방식으로, 1939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강제모집 기간은 2년이었으며, 대상지역은 경기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7개 도에 한정되었다.

1939년 7월 4일 일본 閣議는 조선인 85,000명이 포함된 〈昭和十四年度 勞務動員實施計劃綱領〉을 결정하고, 7월 29일 厚生次官·內務次官이 지방장관 앞으로 〈朝鮮人勞働者ノ内地移住ニ關スル件〉을 통첩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정무총감 명의로 각 도지사에게 〈朝鮮人勞務者募集並渡航取扱要綱〉을 通牒하였다.

강제모집 방식의 강제동원은 일본 厚生省과 道·都·府·縣의 지방장관, 일본 기업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수행된 것이었다. 강제모집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⁴⁾

① 조선인을 '모집'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은 〈朝鮮人勞務者雇入願〉(5통)을 직업소개소에 제출 → ② 직업소개소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부·현 지방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조선인노무자고입원〉(正副 3통)을 제출 → ③ 각 부·현은 '雇入許可가 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厚生省에 上申 → ④ 후생성은 내무성과 협의하여 매년도 노무동원계획(국민동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현에 〈移入許可指令〉 통지 및 조선총독부에도 移牒 → ⑤ 강제모집을 허가받은 기업은 조선총독부에 〈노동자모집허가신청〉 제출 → ⑥ 조선총독부는 〈노동자모집허가신청〉과 〈이입허가지령〉을 비교·대조한 후 최종적으로 강제모집 지역(도/군)을 할당하여 기업에게 통지 및 〈募集從事者證〉 교부 → ⑦ 강제모집 지역을 할당받은 기업은 해당 도에 정식으로 〈모집허가신청〉 → ⑧ 도는 모집의 可否, 모집 인원 등에 대한 의견을 붙여 조선총독부에 보고 → ⑨ 조선총독부의 최종 승인을 통지받은 도는 해당

4) 「朝鮮人勞務者募集要項」, 林えいだい 감수·책임편집, 加藤博史 편집,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조선인 2 中卷, 明石書店, 1991, 1,074~1,078쪽.

기업에게 조선인의 강제모집을 허가하고, 모집 인원을 고려하여 모집 지역(군) 할당 → ⑩ 사업주로부터 <모집종사자증>을 전달받은 모집원은 조선 이동 → ⑪ 기업의 모집원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선인노동자모집고입원> 사본과 <취업안내>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 → ⑫ 기업의 모집인은 도, 부·군, 읍·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조선인 동원(면/군) → ⑬ 현지훈련 및 출발식 거행(경찰서장, 고등경찰 담당) → ⑭ 검역 후 승선 → ⑮ 동원지(탄광 등) 도착

조선총독부로부터 강제모집 인원이 할당되어 도 할당 - 부·군 할당 - 읍·면 할당되는 행정체계 속에서 도, 부·군, 읍·면과 경찰서 및 주재소에서는 할당인원을 채우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였다. 실제로 1942년 당시 지방 말단에서 조선인의 강제모집을 수행했던 인력은 경찰인력 2만여 명, 읍면 직원 2만 5천여 명, 구장 5만 1천여 명 등 무려 9만 7천여 명에 달하였다.

기업의 모집원은 조선인 강제동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와 부·군·도 및 읍·면 직원과 경찰 등에게 뇌물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였다.⁵⁾ 특히, 할당된 인원을 할당기간 내에 채우기 위해 강제적이고 비인간적인 동원방식도 자행되었다. 조반(常盤) 탄광 노무 관리자의 고백을 통해서도 '모집' 방식이 강제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 후쿠오카현 愛宕탄광의 강제모집 업무를 담당했던 노미야마 고와시(野見山魏)는 강제동원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와 지방 행정기구의 협조로 쉽게 인원을 채울 수 있었으나, 1941년 이후에는 닥치는대로 동원했다고 고백하였고,⁷⁾ 赤坂탄광의 쇼토 요기치(松藤要吉)는 조선인을 인솔하고 감시하는 것이 매우

5) 고노마이광산은 1941.11~12월 충남 예산군에서 98명을 동원하기 위해 茶器, 통조림, 셔츠, 과자 등의 뇌물과 '가생'이 동석한 宴會, 단체회식 등 총 46차례의 향응을 제공했다(林えいだい 監修 責任編集, 守屋敬彦 編集,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Ⅲ 朝鮮人2 下卷, 明石書店, 1991).

6) 박경식 지음, 박경옥 옮김,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고즈원, 71쪽.
도청에서는 어느 군에 가장 일손이 많은지 알고 있으므로 그 군으로 간다. 군은 다시 면에 각각 모집 인원수를 지정한다. 그러면 면장(면장은 대개 일본인이다)은 책임지고 날짜에 맞춰 강제로 그 인원수를 끌어 모은다. 그 집의 장님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는다.

7) 「노미야마 고와시(野見山魏, 愛宕탄광 노무계)의 증언」, 하야시 에이다이 저, 신정식 역, 『일제의 조선인노동 강제수탈수』, 비봉출판사, 1982, 176~178쪽.
처음에는 군청에 부탁만 해도 쉽게 모집이 되었습니다. ... 그것은 처음 2년간 뿐이고, 태평양전쟁이 터지자 곧 모집난에 허덕이게 되어 광부 모집 포스터를 여러 곳에 붙였습니다. 이미 면 안에는 탄광에 데려갈 수 있는 장정들이 바닥이 났으므로 더욱 모집은 곤란해졌습니다. 첫째로는 탄광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마침내는 남한에서의 모집이 불가능해지고 북한의 황해도까지 가서 닥치는대로 연행했습니다.

힘든 업무였음을 증언하였다.⁸⁾

동원과정에서도 전혀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고, 삼엄한 감시 속에 철저히 통제되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모집 방식의 강제동원을 조선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응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모집' 과정에서나 '이송'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본인의 의사로 '모집'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고향집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하지만, 삼엄한 감시 속에서 개인행동은 철저히 금지되었다. 말로는 '모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강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다.

결국 강제모집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상 지역과 인원수의 허가·할당단계, 인솔 단계, 동원 후의 통제와 강제노동 단계에 이르기까지 강제동원 전반에 걸쳐 일본 후생성과 조선총독부가 깊숙이 개입하여 주도하였다. 때문에 말은 '모집'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이고 비인간적인 동원 방식이 수행되었던 것이다.

2) 관 주도

일본 국내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강제모집 방식의 조선인 강제동원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관 주도·징용이라는 더욱 폭압적인 수단이 강구되었고, 강제동원 대상자가 새롭게 설정되어 확대되었다.

관 주도는 1942년 2월 13일 일제 각의에서 결정된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과 조선총독부의 <노무동원계획에 의한 조선인 노무자의 내지이입알선요강> 등에 의해 조선인의 강제동원 사무를 朝鮮勞務協會로 일원화하는 보다 강제적인 노동력 동원 방식이었다. 기간은 2년이었고, 강원도와 황해도가 추가되어 9개 도로 확장되었다. 조선노무협회는 1941년 6월 28일 조선총독부 勞務課 안에 설치된 조선총독부의 외곽단체였다.⁹⁾

8) 「쇼토 요기치(松藤要吉, 아카사카(赤坂)탄광 청원순사의 증언」, 하야시 에이다이 저, 신정식 역, 『일제의 조선인노동 강제수탈수탈사』, 비봉출판사, 1982, 173~176쪽.

9) 「朝鮮勞務協會設置 廿八日本府府發會式舉行」, 《매일신보》(1941년 6월 29일).

〈표1〉 조선노무협회 조직표

구분	구성
本會	○ 본부회장: 정무총감 ○ 부회장: 내무국장, 경무국장 ○ 감사: 사계과장 ○ 상무이사: 노무과장, 보안과장, 이사국민총력과장, 지방과장, 사회과장, 토목과장, 상공과장, 광산과장, 농정과장, 제1과장, 철도국운수과장, 개량과장, 국민총력연맹 사무이사, 토목건축업협회 이사, 국민총력광산연맹 사무이사, 조선상공회의소 이사 ○ 참여: 식산국장, 농림국장, 기획부장, 철도국장, 국민총력연맹 사무국총장, 조선토목건축업협회 회장, 국민총력조선광산연맹 회장, 조선상공회의소 회장
支部	○ 지부장: 도지사 ○ 부지부장: 내무부장, 경찰부장 ○ 감사: 도 회계과장 ○ 상무이사: 사회과장 고등경찰과장 ○ 참여: 산업부장 ○ 이사: 국민총력과장, 지방과장, 토목과장, 산업과장(상공과장), 농정과장, 지부장이 위촉한 특별회원, 본회의 사업에 관해서 지식·경험이 유한 자를 지부장이 위촉한 자
分會	○ 분회장: 직업소개소장 또는 부윤·군수·도사 ○ 고문: 경찰서장 ○ 이사: 직업소개소 상석서기/부윤 島 내무부장, 부군도 권업과장, 경찰서 고등주임 및 경무주임, 본회의 사업에 관해서 지식·경험이 있는 자로서 분회장이 위촉한 자
會員	○ 명예회원: 학식·경험이 있거나 특히 공로가 있는 자로서 회장이 추천한 자 ○ 특별회원: 매년도 백원 이상 또는 일시에 천원 이상을 각출하는 자 ○ 보통회원: 본회 발행의 간행물을 구독하고 매년도 2원 이상을 각출한 자

관 주도 방식의 세부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조선인을 ‘알선’받기 원하는 기업(사업주)은 〈募集雇入願〉 4부를 기업을 관할하는 지역의 직업소개소에 제출 → ② 직업소개소는 〈모집고입원〉 3부를 지방장관(道·都·府·縣)에 제출, 경찰서에도 〈모집고입원〉 1부 송부 → ③ 도·도·부·현은 기업에 〈朝鮮人勞務者移入雇傭承認書〉 송부 및 厚生省에 〈모집고입원〉 2부 송부 → ④ 후생성은 기업별 동원인원 할당, 조선총독부에 조선인의 ‘알선’ 승인 통보 및 〈모집고입원〉 송부 → ⑤ 지방장관 승인을 얻은 기업은 조선총독부에 〈朝鮮人勞務者斡旋申請書〉(正副 2통)와 〈도·도·부·현 조선인노무자이입고용승인서〉(사본) 그리고 勞務補導員의 〈이력서〉 제출 → ⑥ 조선총독부는 각 도별 동원 인원과 기간 결정, 도에 〈斡旋內地移入朝鮮人勞務者道選出人員割當決定書〉 通牒 → ⑦ 도는 부·군에 〈斡旋內地移入朝鮮人勞務者選出人員割當決定書〉 통보 → ⑧ 부·군은 府·郡·島별 동원인원 편성 및 도 보고 → ⑨ 도는 인계지, 인계인원 등 조선총독부 보고 및 해당 기업에 통지 → ⑩ 읍·면은 명부 등록순서에 따라 착출 → ⑪ 강제동원 대상자 최종선정 및 [隊員名簿] 작성 → ⑫ 부·군·도는 사업주에 〈인계서〉 인계 → ⑬ 부·군·도는

도에 보고, 도는 조선총독부에 보고 → ⑭ 관할 경찰서장에게 [대원명부]를 제출하여 입국허가 → ⑮ 부산과 여수의 渡航保護事務所에서 檢疫 후 승선 → 동원지(탄광 등) 도착

관 주도 방식에서는 강제모집과 달리 동원대상과 선정기준이 존재하였다. 대상은 연령 만 17~45세로 신체 강건, 사상 견실하고 육체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였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 대상은 ① 희망하는 자, ② 무직자, ③ 과잉농가(1호에 2인 이상의 노동력이 있는 농가), ④ 경작지가 적은 농가였다. 특히, 경지가 협소한 마을, 旱水害가 빈번한 마을, ‘緣故渡航’ 즉, 강제동원된 前歴이 있는 마을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동원토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우선 순위도 정해졌다. 우선 희망자를 우선하였다. 둘째로, 직업이 있는 자 보다는 무직자를 우선하였고, 셋째로, 연령이 많은 자 보다는 연령이 적은 자를 우선하였다. 넷째, 배우자가 있는 자 보다는 독신자를 우선하였고, 다섯째, 부양가족이 많은 자 보다는 부양가족이 적은 자를 우선하였다.

강제동원될 인원이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隊가 편성되고 [隊員名簿]가 작성되었다. 1대의 인원은 보통 100명이었는데, 대의 명칭은 부·군·도명을 사용하여 ‘○○근로출동대’로 불렸다. 대가 편성된 후에는 국방복과 전투모 등을 지급하여 복장을 통일시켰는데, 이는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강제동원 조선인의 대량 수송을 개선하기 위해 1942년 5월 11~12일 시모노세키에서 石炭統制會, 鑛山統制會, 鐵鋼統制會, 土木工業協會 공동 주최로 기획원, 상공성, 후생성, 철도성, 내무성, 海務院, 조선총독부가 모여 輸送協議會를 개최하고, 東亞旅行社와 〈移入朝鮮人勞務者團體輸送取扱手續要綱〉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조선인의 강제동원 수송 업무는 1942년 7월 1일부터 동아여행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¹⁰⁾

관 주도 방식에 의한 강제동원은 강제모집 방식에 의한 것보다도 훨씬 더 조직적이고 강제적인 것이었다. 기존의 강제모집 방식은 일본 후생성, 조선총독부와 해당 기업이 긴밀히 협조하여 조선인이 동원되는 구조였는데 반해, 관 주도 방식은 일본

10)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編, 『朝鮮人強制連行強制勞働の記録; 北海道-千島-樺太 篇』, 78쪽.

후생성과 조선총독부의 총괄 하에 조선노무협회가 주관하여 동원되는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원되는 과정에서는 隊-班-組 등 군대식 대조직으로 동원되었다.

이 시기에도 역시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동원 방식이 수행되었다. 조선인의 강제동원을 직접 담당했던 조선총독부 厚生局 勞務課 직원 다하라 미노루(田原實)는 지방 행정기구를 통한 관 주도 방식이 ‘강제적인 동원’이었음을 고백하였고,¹¹⁾ 1944년 4월에 열린 도지사회의에서 조선총독부 政務總監 역시 관 주도 방식에 의해 ‘억지로 강제동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¹²⁾

3) 징용

징용은 법령으로 강제한 인력 동원방식으로, 징용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징용령 위반”으로 형사처벌되었다. 조선인 징용은 법적으로 1939년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된 것은 1942년 1월부터였는데, 陸軍省 및 海軍省이 관할하는 ‘군사상 특히 필요한 토목공사’에 투입될 軍屬으로서의 징용이다.¹³⁾ 이후 1942년 2월 2일 閣議決定된 <반도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에 의해 재일조선인에 대한 징용이 실시되었고, 1944년 2월 現員徵用이 시작되었으며, 1944년 9월부터 厚生省이 주관하는 일반 기업에도 징용이 확대되었다. 1939년 7월 당시

11) 도노무라 마사루 지음, 김철 옮김, 『조선인 강제연행』, 뿌리와 이파리, 2018, 151쪽).

이 관할선 방식 말인데, 조선의 직업소개소는 각 도에 1개소 정도밖에 없어서 조직도 진용도 극도로 빈약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구인 부, 군, 도를 제일선 기관으로 노무자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이 모으는 작업이 매우 빈약해서 하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송 도중에 도망치거나, 애써서 광산에 데려가도 도주하거나 말썽을 일으키는 등의 사례가 매우 많아져서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징용도 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반강제적인 공출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은 1944년 4월 도지사회의에서 관 주도 방식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언급을 하였다(도노무라 마사루 지음, 김철 옮김, 『조선인 강제연행』, 뿌리와 이파리, 2018, 152쪽).

관청 앞선 노무공출의 실정을 검토해보니, 노무에 응해야 하는 자의 지망 여부를 무시한 채 하루 행정기관에 공출 수를 대충 배정하고, 대부분의 하루 행정기관도 억지로 강제공출을 실시하며, 그리하여 노무능률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결함은 단연코 시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3) 그동안 징용은 1944년 9월였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海軍工具ノ徵用方ニ關スル件>(忠南祕 제1호)에 의하면, 조선총독부로부터 '1941년 12월 31일부로 해군공원의 징용명령이 있었고, 징용일시는 1942년 1월 15일~31일이었다. 더구나, 『판결문』과 『조선검찰요보』, 『특고월보』, 『군법회의 판결문』 그리고 증언 등을 통해 1942~43년 시기 최소 14차례에 걸쳐 4,565명 이상의 조선인이 징용된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시기에도 조선인의 징용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향후 징용될 조선인울 약 72만 명으로 파악하였다.¹⁴⁾

징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징용 대상자 조사(조선총독부) → ② 일본 후생성과 조선총독부는 징용수 협의·결정 → ③ 후생성은 사업장별 할당인원 결정, 지방장관(도·도·부·현)에 通達 → ④ 지방장관은 사업주에게 <徵用申請書> 제출 지시 → ⑤ 사업주는 <징용신청서> 조선총독부에 제출 및 사본 1부를 厚生省과 主務省, 지방장관에 제출 → ⑥ 조선총독부는 사업장별 징용인원 결정, 도 할당 실시 → ⑦ 도는 ‘징용될 자, 종사할 총동원업무, 직업 및 장소, 징용 기간, 출두할 일시 및 장소’ 등 부·군·도에 통달 → ⑧ 부·군·도는 適格者 선정, 개인별 <徵用調書> 작성 및 <出頭要求書> 발부와 <徵用適格者銓衡簿> 작성 → ⑨ 부·군·도는 <徵用適格者連名簿> 작성 및 <徵用者名簿> 도에 보고 → ⑩ 도는 <徵用令書> 발부 → ⑪ <징용영서>와 <징용자명부>를 부·군·도에 송부, <징용영서> 발부현황을 조선총독부에 보고 및 일본지역 관할 부·현 장관에게 통지 → ⑫ 부윤과 군수는 <출두요구서> 발행, <징용영서> 교부 및 <징용자명부> 6통 첨부하여 도에 速報 → ⑬ 부·군에서는 <징용영서> 교부 및 <수령증> 회수 → ⑭ <징용영서>를 받은 조선인은 읍·면사무소 및 군청에 모여 집단적 수송 → ⑮ 조선총독부는 交通公社에 일괄 수송 신청 → 교통공사는 각 도에 <輸送決定書>를 송부 → 도는 부·군·도에 인원 및 인계일시 통보 → 인술(도 및 부·군) → 인계인수(인계명부, 피징용자명부, 노무자단체승차권) → 검역 후 승선

특히, 징용에 불응하는 자는 ‘국민징용령 위반’으로 처벌하였다. 충남지역의 ‘국민징용령 위반’ 판결문(326건)을 분석한 결과, 처벌을 받은 연령은 17세~55세이다. 10대가 23명(7.1%)이고, 20대가 170명(52.1%), 30대가 92명(28.2%), 40대가 38명(11.7%), 50대가 3명(0.9%)로 나타난다. 전체 20~30대가 80.4%(262명)에 달하는 만큼 징용의 주 대상이 20~30대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임을 고려한 판결내용이 확인되는데, ‘심신 아직 발육되지 않은 미성년자이고 개전의 정이

14) 「國民徵用令 不日 公布 朝鮮 內에도 이에 追隨 閣議에서 決定, 늦어도 今月 中旬 實施 七十二萬 登錄者 中 必要 따라 徵用」, 『동아일보』(1939년 7월 6일).

있는 자'라며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¹⁵⁾ 형량 및 형기를 살펴보면 벌금 30원~징역3년으로 다양한데, 징역형은 전체의 91.2%(290건)에 달한다. 특히, 징역 6월~징역1년이 96.6%(280건)에 달할만큼 집중되어 있다. 1945년 2월 이전에는 징역 1년은 보이지 않고 벌금형과 징역 3월~10월이 선고되었지만, 국민근로동원령이 제정된 1945년 3월 이후(175건)에는 징역 8월~3년의 중형이 전체의 84.7%(149건)를 차지한다. 특히, 징역 1년 이상이 33.1%(58건)에 달한다. 일제의 침략전쟁이 격화되고 패망이 가까와지면서 국민징용령 위반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인의 징용은 그야말로 폭력적인 동원이었다. 한밤중이나 새벽녘에 잠들어 있는 사람을 붙잡아 끌어들였으며, 논밭에서 한참 일하고 있던 사람까지도 트럭에 태워 홋카이도나 큐슈의 탄광으로 동원하였다. 순사들이 길거리에서 붙잡아 끌고갔고, 징용장도 없이 그냥 말로만 전달받고 강제로 끌려갔으며, 방에서 가마니를 치다가 잡혀가서 짐도 챙기지 못하고 헨 옷과 헨 신발 입고 있던 그대로 끌려갔다. 조선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징용될 때는 가족과의 이별이나 준비할 시간조차 없이 끌려가기 일쑤였다.

이상과 같이, 강제동원 방식인 강제모집과 관 주도, 그리고 징용은 동원시기, 대상지역, 동원 및 인솔주체, 대상자의 선정기준, 동원과정 등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3가지 방식 모두 일본 후생성(도·도·부·현, 경찰)과 조선총독부(도, 부·군, 읍·면, 경찰)의 공권력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선인을 동원해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일제는 노무(국민)동원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조선인의 인력동원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기업의 조선인 노동력의 요청('모집'이나 '알선', 징용)에 대해 일본 후생성과 조선총독부의 허가나 승인 없이는 '모집'과 '알선' 그리고 징용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조선인의 강제동원은 대상자의 선정~인솔 등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일제(후생성, 도·도·부·현과 경찰, 협화회)와 조선총독부(노무과, 지방 행정기구, 부락연맹, 경찰)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실행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강제모집과 관 주도 그리고 징용 방식은 그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측면 그리고 강제성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 당시에 강제동원되었던 분들의 공통

15) 「金田〇〇와 木村〇〇의 판결문」, 『형사재판원본』(CJA0002151).

된 증언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당시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동원방식은 강제모집, 관 주도, 징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강제동원이 시작된 1939년부터 해방이 되는 해인 1945년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탄광이나 광산 등 동원지에 도착한 강제동원 조선인의 삶 또한 동원방식과는 무관하게 별반 차이가 없었다. 자유가 없는 통제 생활이었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조건 속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음식, 임금, 노동시간 등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일상적인 노동재해나 노무관리자의 억압과 폭력 상황도 같았고, 일본인과의 민족차별 상황도 동일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강제모집, 관 주도, 징용은 그 동원시기, 동원 대상지역, 인솔주체, 동원과정 등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지만, 피동원자였던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일제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체계적인 인력 동원이라는 점, 강제성의 측면, 동원 이후의 노동환경, 노동조건 및 민족차별의 측면 등에서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3. 강제동원 실태

1) 군대식 노무관리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일본인 노동자들과 달리 하루하루의 日課가 철저히 통제되고 억압과 폭력이 일상화된 감옥과 같은 생활에 놓여 있었다. 기업의 노무관리자를 비롯하여 경찰, 협화회, 헌병 등 다중 통제 하의 상황이었다. 무엇보다도 조선인은 군대식 조직에 편제되어 집단생활이 강요되었다.

사업장은 울타리와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초소에서는 24시간 감시가 이루어져 인신 구속적 상태에서 생활하였다. 함바(飯場)나 寮라는 숙소에 살면서 집단생활이 이루어졌다. 사업장을 자유로이 떠날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부정되었음은 물론이다.

조선인 숙소는 일본인 숙소와 분리되었다. 조선인이 동원된 공장·사업장 등에서는 조선인을 일본인과 구별하여 수용하고, 일본인과의 접촉을 가능한 피하도록 조치하였다. 조선인의 숙소는 기존의 건물을 수리하거나 급조한 조립식 건물이었다. 조

선인 숙소는 말이 기숙사이지 실제로는 감옥과 같았으며, 강제노동을 위한 수용시설이었다.

일제는 강제동원 조선인의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주사를 놓았다고 한다. 정작 주사를 투입받은 조선인들은 어떤 주사인지도 몰랐다. 혈기 왕성한 조선의 젊은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일하러 나가기 전에 ‘성욕을 억제하는 주사’까지 주입하였던 것이다.

대부분은 외출이 금지되었고 편지 왕래도 할 수 없었다. 일부 외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인솔자의 인솔 하에 가능하였고, 편지도 사전 점검을 받은 후에 보낼 수 있었다. 일제는 강제동원 조선인에게 ‘書翰指導’를 실시하였다. 부모나 가족에게 쓰는 편지를 ‘생산증강 상 가장 중요한 일’로 평가했다. ‘서한지도’에 의하면, 국민의식을 양양하는 戰果의 발표라든가 戰場과 요 생활의 즐거운 週間反省 후에 편지를 쓰게 하고, 가급적 인사말로 끝내지 않고 생활 상황이 ‘손에 잡히도록’ 고향의 부모님께 전하도록 지도하였다. 특히,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은 때라든가 병에 걸린 때에는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특별지도를 하였다.¹⁶⁾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일상은 폭력 그 자체였다. 당시를 회상하는 증언자들 모두가 조선인이 맞는 것을 보았거나 혹은 직접 폭력을 경험할만큼 조선인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매를 맞아 정신 이상이 되거나 자살하는 청년도 있었다. 강제동원 조선인은 일상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심한 고문도 당했다고 한다.

강제동원 조선인과 일본인 노동자 사이 不和가 생기거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노무관리자나 순사는 일방적으로 일본인 노동자의 편이었다. 심지어는 합세하여 조선인을 나무라면서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이상과 같이, 충남 출신 강제동원자는 전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지 못하였고, 일본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제한된 공간에 속박되어 생활하였다.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도 받지 못한채 비인간적인 억압적·폭력적 체제 속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무시된 채 상시적인 감독의 몽둥이질과 경찰의 폭력은 ‘언제 또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 일제의 일상화된 민족 차별과 폭력 때문에 조선인은 반일감정이 점차 높아져 갔다.

16) 中央協和會, 『移入勞務者生活訓練必携』.

2) 노동환경

(1) 노동시간

일제는 內鮮一體를 주장하며 원칙적으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북해도탄광기선(주)이 1939년 10월 1일 제정했던 〈移入勞務者訓練及取扱要綱〉에 의하면, ‘임금, 노동시간 등은 賃金統制令, 就業規則 등 모든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식사, 숙소, 복리, 의료 등에서도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鮮人內地斡旋要綱〉에도 ‘본 要綱에 의해 알선한 조선인 노무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일본인 노무자와의 사이에 차별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문헌자료로써만 연구를 수행할 경우 위험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때문에 피지배자로서 착취받은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지배자의 실제 경험(구술자료)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은 광업소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 교대가 없는 경우에는 새벽 6시~오후 6시, 2교대인 경우에는 새벽 4시~오후 2시와 오후 2시~밤 11시 또는 새벽 6시~오후 4시, 오후 4시~새벽 2시, 3교대인 경우에는 새벽 6시~오후 2시, 오후 2시~밤 10시, 밤 10시~새벽 6시이거나 새벽 6시~오후 4시, 오후 2시~밤 11시, 밤 11시~아침 7시 등이었다.¹⁷⁾

2교대 작업은 2개 팀이 10시간씩, 3교대 작업은 3개 팀이 9시간씩 교대하는 노동 체제였으나, 실제로는 12시간을 넘어 14시간 이상의 노동이 빈번하였다. 1944년 야마구치 탄광에 동원된 안병구의 경우, 2교대 작업을 하였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약 14시간 동안 노동에 시달렸음을 증언하였다. 특히,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에 종사했던 ‘다코베야’의 조선인 또한 2교대로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후쿠오카현 호슈(豊州)탄광 가미다(神田)광업소의 坑長이었던 사카다쓰구모(坂田九十百)의 증언에 의하면, 1일 15시간 노동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출탄

17) 勞働科學研究所, 『半島勞務者勤勞狀況に關する調査報告』, 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 제1권, アジア問題研究所, 1982.

량이 약 5배나 증가될 정도로 채탄 현장에서의 노동이 강화되었다.¹⁸⁾

2교대나 3교대 모두 사업장 내에서는 잠시도 쉬는 시간 없이 하루 온종일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일본인 감독의 감시 하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모토야마(本山)탄광의 운반부로 동원된 김동업은 삽으로 구루마에 탄을 싣는 일을 했는데, 일본인 감독관의 감시 때문에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했다. “天命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고 회상하였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산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군대식 편제와 노동규율에 따라 작업시간은 물론이고 기숙사를 통한 노동통제에 따라 하루 24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2) 식사

강제동원 조선인들은 동원된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점이 “강제적으로 일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점은 배고픔이었다.”라고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그 정도로 강제동원 조선인들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식사문제였다.

식사의 질도 질이지만 양이 너무 적어 몇 숟가락 먹으면 없어졌다고 한다. 매일매일의 고된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디기에는 부족한 식사량과 음식의 질이었던 것이다. 식사에 있어서도 민족 차별이 존재하였다. 조선인과 일본인은 별도의 식당에서 각각 식사하였다.

일제는 강제동원 조선인들에게 ‘식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찬밥도 기쁘게 먹고,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먹게 하고, 조리가 불충분할 때도 불평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홋카이도 A광업소의 식단을 살펴보면, 아침은 야채국이나 미역국 등이 제공되었고, 점심과 저녁도 일본식 요리를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12시간 이상의 육체노동을 감당했던 강제동원 조선인들이 먹는 식단으로서는 영양이나 체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18) 「사카다 쓰쿠모(坂田九十百, 전 호슈(豊州)탄광 가미다(神田)광업소 坑長)의 증언」, 하야시에이다이 저, 신정식 역, 『일제의 조선인노동 강제수탈사』, 비봉출판사, 1982, 147~150쪽.

2개월 후에는 출탄량이 7천 톤이 되고 그로부터 반년 후에는 1만 톤이 되는 경이적인 기록을 냈습니다. 출탄량이 5배나 증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채탄현장에서의 노동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석탄 증산에 대한 비상사태이므로 1일 15시간 노동은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의 막바지였으므로 다소의 희생은 감수해야만 했죠.

북해도탄광기선(주) 상무이사(高谷金一郎)가 1940년 12월 북해도청장관에게 보낸 <진정문>에 의하면, 원래 1일 약 2ℓ이었던 식사량이 1940년 12월 당시에는 약 648ml(당초의 32.7%)로 줄어들어 출탄 능력에도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호소하는가 하면, <진정서>에는 식량 부족을 이유로 歸鮮을 요구하거나 盛切制(한 그릇 식사만 제공하고 더 주지 않음)의 시행으로 불만이 쌓여 盜食이 빈번하였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조선인들이 음식점에 몰려드는 상황이었다.

특히, 일제가 1941년 4월부터 실시한 「米穀消費規正」에 따라 종래 1인 1일의 식사 배급량이 1升 내지 7~8습에서 20~30% 수준인 2습 3勺으로 급격히 줄어들자 육체노동을 담당했던 조선인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때문에 조선인들은 식사량의 減食을 이유로 집단파업, 태업 등 노동쟁의를 전개하였고, 탈출을 시도하였다. 홋카이도의 가야누마(茅沼)탄광과 가시와구라이와(柏倉石)광업소, 북해도탄광기선(주) 유바리(夕張)광업소, 미에(三重)현의 기슈(紀州)광산, 후쿠시마현의 요시마(好間)광업소와 이와키(磐城)탄광, 야마다(山田)탄광과 히라야마(平山)탄광 등에서는 集團罷業을 전개하였고, 후쿠오카현의 야하타(八幡)제철소, 가와마쓰(若松)항 도바타(戸畑)작업장, 日本化成(주), 치쿠시(築紫)광업소 등 후쿠오카현에서만 20건(164명)에 달하는 怠業을 전개하였다. 또한 日本化成(주) 소속 조선인 2명은 농촌 방면으로 탈출하였고, 후쿠오카현 미쓰비시광업소에서는 도시락 도난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¹⁹⁾

일제는 일상화된 식량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각 기업별로 지방 실정에 맞는 代用食을 충당하게 하고, 副食物을 이용하여 포만감을 줄 수도 있도록 하는 한편 야채류를 스스로 길러 충당토록 강구하였다.²⁰⁾ 이는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밥 대신 우동, 도꼬로맹, 대나무죽 등 代用食을 사먹거나 밥에 콩깻묵이나 고구마, 옥수수, 쑥 등을 섞어 식사량이 많게 했던 것이다.

19) [米穀消費規正に對する在任朝鮮人の動靜], 明石博隆·松浦總三 編, 『昭和特高彈壓史』 7, 太平出版社, 1975.

20) 「移入勞務者訓練及取扱要綱」, 長澤秀 編, 『戰時下朝鮮人中國人聯合軍俘虜強制連行資料集』 II 朝鮮人強制連行(文書編), 綠蔭書房, 1992.

(3) 임금

일본 정부와 기업은 조선인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였고, 일본인과 그다지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강제동원되었던 조선인들은 한결같이 임금을 지불받지 못했거나 용돈 정도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증언한다.

일본인 노동자와 강제동원 조선인은 임금체계 자체가 달랐다. 일본인 노동자는 採用과 동시에 請負制였기 때문에 작업 능력에 따라 수입에 차이가 있었지만, 강제동원 조선인은 고정된 월급제가 많았다. 따라서 일본인 노무관리자는 ‘조선인은 일하는 자나 일하지 않는 자가 최저 2원이기 때문에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일하는 자만 바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²¹⁾

1943년 5월 당시 일본 노동과학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B광업소의 경우 조선인은 90원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전체의 71.6%이고, 170원 이상의 고액은 전체의 5.9%에 불과한 반면에 일본인은 90원 이하가 48.4%이고 90원 이상이 51.6% 비율이었다. D광업소도 조선인은 70원 미만이 87.3%였는데 반해 일본인은 39% 수준이었고, I광업소도 조선인은 70원 미만이 61.5%, 일본인은 44.3%였다. A광업소의 경우, 일본인의 하루 임금은 최저 0.60원~최고 244.71원으로, 월 평균임금이 77.26원이었던 데 반해, 조선인의 하루 임금은 최저 2.60원~최고 168.02원으로, 월 평균임금이 69.90원이었다. 또한 F광업소의 경우도 일본인의 임금은 1.98~6.043원으로 평균 3.894원이었던 데 반해 조선인의 임금은 2.571~4.579원으로 평균 3.373원이었다. 조선인의 평균임금은 A광업소의 경우 90.5% 수준이었고, F광업소는 86.6% 수준이었다. 조선인은 70원 이하의 저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인은 90원 이상의 중·고임금이 많았다. 임금에 있어서도 명백히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민족 차별이 존재하였다.

언뜻 보기에 강제동원 조선인의 임금이 일본인 노동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높은 임금을 받은 조선인은 강제동원된 조선인이 아니라 재일조선인 노동자라는 점이다. 업무연한이 축적되고 일정한 기술을 습득한 재일조선인의 임금을 감안한다면 강제동원 조선인의 평균임금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21) [朝鮮人勞働者指導員二對スル内地人現場係員ノ談], 內務省 警報局 保安課, 『특고월보』 제24집.

일제는 강제동원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경제생활에 대한 지도와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최저 생활을 만족케 하여 저축의 증강을 기하고자 하였다.²²⁾ 강제동원 조선인들이 필수품 외는 구입하지 않도록 ‘賣物指導’을 하고 저금을 강요하는 한편, 고향에 보내는 송금도 최대 20~30원을 원칙으로 하여 통제하였다. 또한, 報國債券, 貯蓄債券, 어음(彈丸切手)을 구입하도록 하였고, 국가관념을 함양시키는 방편으로 郵便貯金, 簡易保險, 기타 각종 보험에 가입토록 지도하였다. 특히, 저금액을 달성시키기 위해 매달의 개인별 수입과 저금액, 송금액, 용돈 등이 기재된 표를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 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들의 강제노동에 대한 댓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개개인에게 노동에 대한 임금이 지불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강제동원 조선인들의 탈출 방지를 위해 1인 1월 최대 10~15원의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일부에서는 임금이 지급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몇 푼의 ‘용돈’만이 지급될 뿐이었다.

일제는 강제동원 조선인의 월급에서 숙소 비용, 식비나 옷값, 이불값 등 갖가지 명목으로 제외하였다. 노동과학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광업소에서의 공제내역과 비용은 기숙사 비용, 식비, 이불 대여료, 전등료, 協和會費, 親友會費, 銃後後援會費, 작업복, 작업모, 地下足袋, 삼, 휴대전등, 共愛會費 등 매월 34원 46전~51원 42전이였다.²³⁾ 또한, 1941년 10월 충남지역에서 강제모집 방식으로 고노마이광산에 동원될 당시의 <취업안내서>에 의하면, 식사비 1일 60전(월 18원), 침구료 매월 3원, 積立金 매월 임금의 3/100, 法定積立金 매월 임금의 2/100, 愛國貯金 매월 1口 1원 이상, 任意貯金 등이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²⁴⁾ 당시 갱내부의 최소 임금 매월 51원(1일 1원 70전)에서 최소한의 공제금액 32원(식비 18원, 침구료 3원, 적립금 및 법정적립금 10원, 애국저금 1원)을 공제한 19원이 고노마이에 동원된 조선인이 지급받는 액수였다.

22) 中央協和會, 『移入勞務者生活訓練必携』, 20쪽.

23) 勞働科學研究所, 『半島勞務者勤勞狀況に關する調査報告』, 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 제1권, 아시아問題研究所, 1982).

24) 『半島勞務動員募集關係書類』, 林えいだい 監修·責任編集, 守屋敬彦 編集,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III 朝鮮人2 下卷, 明石書店, 1991).

일제는 ‘貯蓄報國’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강제동원 조선인을 貯蓄組合에 가입시키고, 필요한 송금 및 생활비 이외는 모두 저금시켰다. 특히, 저금통장은 강제동원 조선인이 보유하며 확인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 공장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자가 보관하였다.²⁵⁾ 때문에 강제동원 조선인은 실제로 본인의 저축액이 얼마였는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심지어는 1943년 아카사카(赤坂)탄광에 동원된 文有烈은 노무관리자에게 저금통장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쓰러진 채 몸동으로 맞았다.

강제동원 조선인들은 일제의 강제저축에 항의하는 한편 집단 罷業을 전개하였다. 1939년 11월 19일 이와키(磐成)탄광(주)에서는 강제동원된 조선인 139명 전원이 강제저축에 항의하였다. 1943년 6월 홋카이도 도코로(常呂)군 루베시베초(留辺蘂町)의 노무라(野村)광업(주) イトムカ광업소에서는 조선인 전원(160명)이 강제저축 액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며 一齊罷業하였고, 같은 해 7월 4일 오이타(大分)현 홋카이부(北海部)군 소재 第二陸軍造兵廠 사카노이찌(坂ノ市) 제철소에서도 강제저축 완화 등을 요구하며 일제히 罷業하였다.²⁶⁾ 관할 경찰서에서 기업 측에 ‘저축액이 가혹함을 인정하고 개선토록 조치하였음을 감안할 때, 일제의 강제저축이 얼마나 심했던가를 추측할 수 있다.

(4) 노동재해

일본 지역의 탄광, 광산, 군수공장, 토건공사장에서 동원되었던 조선인 중에 죽거나 다친 이도 많았다. 死傷者는 약 30만 명이었고, 그중 사망자는 6만 명에 달했다. 특히, 1943년 이후는 재해율이 높아져 사망자수도 증가하였다. 일제 말기로 갈수록 資材의 결핍은 末期狀態를 드러내고 그 중에 채탄 및 운반의 주요 機器는 노후하기 때문에 고장이 속출하고 사고 발생율은 평상시의 7배에 달했다.²⁷⁾ 1943년 노동과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9개 광업소에서의 1년 사이 사망자는 82명, 중상자는 488명이었다. 특히, 홋카이도 지역은 재해 발생횟수나 재해자수가

25) 中央協和會, 「出動勞務者訓練服務心得準則」,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제4권, 1975.

26) [國民貯蓄等の緩和を目的とし罷業したるもの], 明石博隆・松浦総三 編, 『昭和特高彈壓史』 8, 太平出版社, 1975.

27) 北海道炭鑛汽船株式會社, 「七十年史 勤勞篇 -第一次 稿本-」, 林えいだい 監修・責任編集, 加藤博史 編集,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朝鮮人 2 中卷, 明石書店, 1991.

꾸준히 1만여 명을 훨씬 웃돌았다.²⁸⁾ 사망 및 부상자수는 전체 노동자의 17.6~22.4%에 달하는데, 5명 중의 1명 정도가 노동재해를 당한 셈이다. 특히, 광업소에서는 사망자와 중상자 모두가 많았던 데 반해 토건작업장에서는 중상자의 비율이 높았다.

막장이 무너져 매몰되는가 하면, 작업 중에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기계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입기도 하였다. 발파작업 때에는 가스 폭발로 爆死하였고, 가스 중독으로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鑛車나 炭車에 깔려 壓死하기도 하였고, 火傷이나 感電 사고도 빈번하였다. 필자는 강제동원자의 증언을 채록할 때마다 “팔과 다리나 배, 등이나 어깨 등의 흉터를 직접 보여주며 죽을 뻔한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홋카이도 소라치(空知)광업소로 동원된 윤병렬의 증언에 의하면, ‘굴 안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魂魄을 짊어지고 간다.’는 말이 퍼질 정도로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죽음에 직면해 있었던 상황이었다.

4. 거부투쟁

1) 비밀결사 조직과 항쟁

조선인이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해 순순히 응한 것만은 아니었다. 소극적으로는 만주 등지로 망명하거나 전국 각지를 전전하였다. 또한,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항거하였고, 그들의 동원을 직접 담당했던 순사나 노무계 직원, 區長 등을 위협하거나 살해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우선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항하여 조직을 결성하고 항쟁하였다. 경상북도 경산군에서는 청장년 29명이 食刀, 竹槍, 鎌 등의 무기를 휴대하고 산 정상에서 농성하면서 징용에 저항하였다.²⁹⁾ 1944년 8월 12일 경산군의 청장년 24명은 오전 11시 大旺山(해발 700m) 정상에 올라 安昌律을 대장, 金命珪를 부대장으로 추대하고 조직을

28) 「北海道炭鑛災害死傷者調」, 林えいだい 監修・責任編集, 白戸仁康 編集,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朝鮮人 2 上卷, 明石書店, 1991).

29) 內務省 管理局, 「제85회 帝國議會說明資料」, 近藤劔一 編, 『太平洋戰下終末期の朝鮮』, 友邦協會, 1967.

결성하여 '決心隊'로 명명하였다. 바로 이 항쟁이 '大旺山竹槍義舉'로, 경상북도 경산군의 청장년 29명이 대왕산에 올라 성을 쌓고 죽창으로 무장하며 실제로 일제와 投石戰을 벌여 승리한 항쟁이었다.³⁰⁾

또한, 항일 독립운동의 차원에서 비밀결사에 의한 징용 거부투쟁이 전개되었다. 金重鎰를 비롯하여 鄭文圭, 崔昇宇, 李昌器, 吳相欽 등은 1944년 7월 하순 '조선 청년 다수가 징용을 당하면 조선 독립의 때에 능력있는 청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징용을 반대할 것'을 논의하고, 징용반대 檄文을 작성하여 京城驛을 출발하는 열차 안에서 살포하기로 협의하였다.

五目會는 1940년 5월 朴相瑜, 柳春逢, 金在子 등 咸興永生學院 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비밀결사로, '지원병제와 징용제에 협조하는 것은 利敵行爲이므로 이를 기피, 거부하게 한다.'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징용 거부투쟁을 벌였고, 순창농림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조직한 비밀결사 和寧會는 항일 독립운동의 방안으로서 징병·징용 거부투쟁을 벌이다가 1944년 7월~1945년 1월 사이 피체되어 심한 고문과 함께 퇴학처분을 당했다. 尹旻燮, 劉溶根 등 50여 명이 조직한 朝鮮人學友會는 1942년 松禾지역의 군중들 앞에서 학병·징용반대 연설을 행하는 등 징용 거부투쟁을 벌였다.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하여 개인 차원에서 항거한 사례도 나타난다. 1944년 9월 조선총독부가 제85회 日本帝國議會 보고한 설명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읍·면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는 사례가 20여 건에 달하였고, 충남지역에서는 경찰관이 살해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읍·면 직원의 집 안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편지를 써서 협박하기도 하였다.³¹⁾ 특히,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崔海天의 항거가 주목된다.³²⁾ 최해천은 1945년 7월 자신을 징용하기 위해 야음을 틈타 찾아온 강경경찰서 성동주재소 경사를 타살하였다. 일제는 경찰관과 읍·면 직원 뿐만 아니라 警防團員까지 동원하여 최해천을 잡으려고 하였다. 대둔산 石泉庵(충남 논산군 벌곡면)에 피해 있던 최해천은 경찰과 경방단원에게 포위되었음을 깨닫고,

30) 노영중, 「일제말기 조선인의 北海道地域 강제연행과 거부투쟁」,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7집, 2001, 171쪽.

31) 당시 충남 논산군청에서 근무한 김영한(金英漢)의 증언(필자가 1999년 12월 7일 자택에서 면담).

32) 최해천은 경주 최씨로 1901년 2월 1일(음) 생이다. 공주군 반포면 상신리에서 3남 중 막내로 태어나 서당선생 權重堯의 영향을 받아 3·1운동에 참여하였고, 논산군 성동면으로 이사했다(최문휘, 『공주군 상신리』, 충청남도 향토문화연구소, 1993).

나는 너희들에게 잡혀서 죽지 않는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스스로 죽는다. 그러나 한마디 할 말이 있다. 왜 조선 사람을 왜놈들의 전쟁에 끌어들여 하느냐? 나는 조선사람이다. 나를 잡아다가 왜놈들 싸움에 희생을 시키려 하니까 나를 잡으로 온 놈을 죽인 것이다.

라고 질책하며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 최해천은 일제의 징용에 죽음으로써 항거한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자신을 징용 보낸 면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두 차례나 징용되었던 岡村〇〇는 동원과정에서 탈출한 후 본인을 징용한 면사무소 직원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몇 번이나 나를 징용했는가?”라고 항의하며 얼굴을 때리고 몽둥이로 등쪽을 가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³⁴⁾ 이와 같은 강제동원 폐해는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다. 1945년 11월 14일 강원도 고성군의 최덕〇은 본인의 장남을 징용 보낸 구장 최천〇을 복수하고자 살해하였던 것이다.³⁵⁾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당시는 물론 해방 이후에도 지역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2) 탈출

(1) 탈출 방지책

일제는 강제동원 조선인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다. 우선 동원되는 현지에서는 高等警察의 주도 하에 現地訓練을 실시하고, 出發式을 거행하였다.³⁶⁾

강제모집 조선인의 탈출을 방지하고 원활한 인술을 위해 시모노세키의 시청 내에 <下關渡航者保護斡旋所>를 개설하였고,³⁷⁾ 조선인의 동원경로를 따라 숙박시설과

33) 노영중, 「일제말기 조선인의 북해도지역 강제연행과 거부투쟁」,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7집, 2001, 170쪽.

34) 「강촌〇〇의 판결문」, 『형사재판원본』(CJA0002035)(국가기록원 소장)

35) 「徵用싸고 骨肉相爭 兇해 殺害」, 《民主衆報》(1945년 12월 22일).

36) 「內地移住勞働者訓練要綱」, 宮田節子 編, 『高等外事月報』 2, 高麗書林, 1988.

37) 「下關渡航者保護斡旋所開設狀況」, 宮田節子 編, 『高等外事月報』 2, 高麗書林, 1988.

휴게시설을 마련하였다.³⁸⁾ 특히, 1944년에는 강제동원자의 숙박소인 〈内地送出勞務者鍊成所〉를 부산과 여수에 설립하였는데, 숙박 중에 강제동원 조선인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조선인의 탈출이 빈번했던 기차와 인계지에서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인노무자 내지송출의 강화에 대하여〉라는 특별한 주의사항을 시달하였다.³⁹⁾ 정차 중에는 하차를 금지하였고, 승강구에 서있는 것도 금지하였다. 용변도 기차 안에서 해결토록 하였는데, 부득이하게 화장실을 갈 경우에는 인솔인이 화장실까지 쫓아다닐 정도였다.

또한, 일제는 강제동원 조선인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인을 군대식 隊組織으로 조직하는 한편 특별히 인솔전문가⁴⁰⁾를 고용하였다. 관 주도 방식부터는 조선인 5명별로 組를, 읍·면별로 班을, 부·군별로 隊를 조직하는 등 組-班-隊의 隊組織으로 조직하고, 각각 組長, 班長, 隊長을 임명하여 연대책임을 지웠고, 동일한 복장으로 통일시켜 동원하였으며, 깃발을 앞세워 인솔하였다.

일제는 인솔자에 대한 교육과 당근책도 제시하였다. 인솔자들이 ‘産業戰士의 인솔 지도자’라는 자각과 긍지를 가지고 수송임무에 임하도록 수시로 訓示하고, 訓話 및 鍊成打合會를 실시하였다. 인솔자 간의 경쟁심을 조장하고 이를 근거로 성적 순으로 상장 등을 수여하였고, 탈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솔인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조선인의 탈출 방지에 진력을 다하였다.

일제는 조선인이 일본에 도착하자마다 協和會에 등록시켜 기업은 물론 경찰과 협화회의 다중 통제 하에 두어 감시하였다. 동원 과정에서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했던 隊조직은 공장·광산 등 생산현장에서도 유지되었다. 특히, 탈출 방지를 위해 강제동원 조선인 1인당 매월 최대 10~15원의 금액만을 지급하였다.⁴¹⁾

각 기업은 조선인의 탈출을 대비하여 강제동원 조선인 개인별로 성명, 본적지, 연

38) 守屋敬彦, 「朝鮮人強制連行における募集・官斡旋・徵用方式の一貫性」, 《道都大學紀要》제14호, 1995, 37쪽.

39) 「朝鮮人勞務者内地送出ノ強化ニ就テ」, 長澤秀 編, 『戰時下朝鮮人中國人聯合軍俘虜強制連行資料集』Ⅱ 朝鮮人強制連行(文書篇), 綠蔭書房, 1992.

40) 노무보도원은 조선인 100명당 2명, 100명 증가시 1명을 추가하였다. 연송인은 열차 내 등 육지에서는 동원자 30명당 1명, 船内에서는 50명당 1명이다.

41) 勞働科學研究所, 「半島勞務者勤勞狀況に關する調査報告」, 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 제1권, アジア問題研究所, 1982.

령 등의 신상정보와 키, 눈·코 등 얼굴 생김새, 사진까지 첨부된 카드를 작성하였다. 조선인 탈출자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개인별 카드를 참고하여 별도의 탈출자 리스트를 작성하였다.⁴²⁾ 또한 각 기업은 숙소마다 탈출을 인화 목표치를 설정케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노무직원에게 ‘도주방지 현상금’ 수당을 지급하였고,⁴³⁾ 탈출자 1명 체포할 때마다 5엔의 상여금을 경찰에게 지급하였다.⁴⁴⁾

그럼에도 조선인의 탈출자수가 점차 증가하자 1942년 8월 6일 후생성·내무성·상공성 차관 공동 명의로 탈출방지대책으로서 〈移入朝鮮人勞務者防止對策要綱〉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일제는 강제동원 조선인의 탈출 방지를 논의하기 위해 1942년 8월 12일~9월 19일 厚生省이 주도하고 內務省, 商工省, 道·都·府·縣, 광산감독국, 중앙협화회 등이 공동 주최로 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⁴⁵⁾

특히, 일제는 조선인의 탈출을 방지하고 탈출한 조선인을 수색하기 위해 ‘內鮮警察’을 조직하고 운영하였다. 내선경찰 조직은 1921년 7월 28일 特別高等課 산하에 內鮮高等係로 신설되었고, 1932년 6월 28일 特別高等警察部 산하의 內鮮課로 하나의 課 단위로 확대되었다.⁴⁶⁾ 이후 조선인의 강제동원이 시작되는 1939년부터 매년 내선경찰의 증원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일제의 내선경찰 증원 기준은 강제동원되는 조선인의 인원수였다. 즉, 새로 동원되는 조선인 550명마다 순사 1명씩을 증원하였고, 순사 20명이 증원될 때마다 警部補 1인을 증원시켰다. 특히, 조선인이 대량으로 동원되는 사업장에는 경찰이 직접 배치되었는데, 강제동원 조선인 1,5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순사 1명과 경부보 1명, 1,000~1,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순사 1명의 배치가 원칙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500명 이상~1,000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순사 1명이 배치되었다. 1944년 12월 현재 1,500명 이상의 조선인이 동원된 사업장은 224개, 1,000명~1,500명의 조선인이 동원된 사업장은 207개에 달했다.

42) 桑原眞人, 『戰前期北海道の史的硏究』,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1993, 246~249쪽.

43) 長澤秀, 「戰時下常磐炭田における朝鮮人鑛夫の勞働と闘い」, 梁泰昊 編,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 明石書店, 1993년, 188쪽.

44) 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編纂委員會·札幌大學北海道委託調査報告書編纂室, 『北海道と朝鮮人勞働者』, ぎょうせい(주), 1999, 77~78쪽.

45) 「移入朝鮮人勞務者逃走防止打合會開催ニ關スル件」(厚生省發生 제82호, 1942년 8월 6일).

46) 「警視廳組織系統沿革圖」, 『種村氏警察參考資料』 제90집.

(2) 강제동원자의 탈출

강제동원 조선인들은 일제의 갖가지 탈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동원되는 과정이나 동원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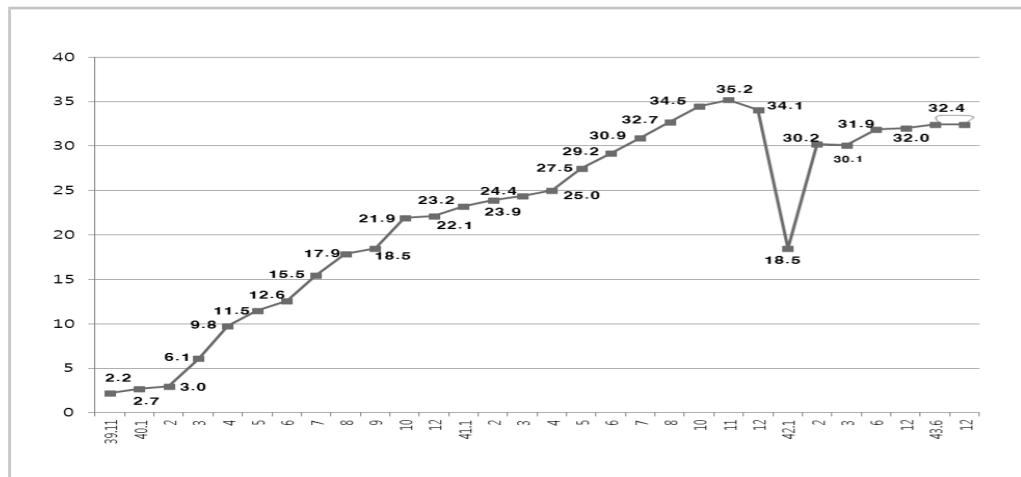
고향 현지에서는 물론, 기차역에서, 현지에서, 숙박지에서 그리고 환승역에서, 달리는 열차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탈출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징용에 응하지 않는 조선인을 국민징용령 위반죄로 가차없이 처벌하였다. 그럼에도 동원과정에서의 조선인 탈출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강제동원자들은 동원되는 과정에서도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탈출을 시도하였다. 숙박 중에 집단적으로 탈출하였고, 기차가 정차 중일 때는 기회를 엿보다가 플랫폼의 반대쪽으로 달아나 탈출하였으며, 물을 마신다거나 용변을 본다는 구실로 탈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달리는 열차 안에서 뛰어내리기도 하였다.

일본에 건너간 이후에도 동원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수시로 탈출을 시도하였고, 집단탈출도 빈번하였다. 홋카이도 슈마리나이(朱鞠内)댐 공사장으로 동원된 李詳石의 증언에 의하면, 부산의 여관과 도쿄행 열차의 환승지였던 오사카(大阪)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탈출했다.

일제의 정보당국은 강제모집 초기단계인 1939년 11월부터 1943년 12월 사이 탈출 인원을 조사하였다.

〈그림 1〉 조선인 탈출율(1939년 12월~1943년 12월)



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출인원과 탈출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높아졌다. 1939년 11월 2.2%(429명)였던 탈출율은 1940년 4월에는 10%(4,518명)에 가까워졌고, 1940년 10월에는 이미 20%(15,392명)를 넘어섰으며, 1941년 7월에는 30%(33,152명)를 넘는 수치이다. 이후 1943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30%를 넘어서고 있다. 탈출율이 가장 정점을 이룬 것은 1941년 11월이다. 탈출율이 무려 35.2%에 달하였는데, 이는 조선인 강제동원자 3명 중 1명이 탈출할 정도로 높은 비율이었다.

1944년 2월 일본 전역에서 <도주이입조선인노무자 일제취체요강>에 의거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탈출인원은 2,656명으로 협화회 회원장을 소지 않은 인원의 20.5%에 해당된다. 1942년의 조사(8.9%)에 비해 무려 11.6%가 증가한 비율로, 이는 강제동원 조선인이 협화회의 통제가 심해진 상황임에도 오히려 탈출비율은 증가한 상황이었음을 말해준다. 탈출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홋카이도(850명)이고 효고현(497명) 등 탄광과 광산 등으로 전체 탈출인원의 45.1%에 달하였다. 탈출원인에 있어서도 자발적인 탈출이 93.8%(2,491명)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상적인 폭력과 배고픔에 시달리던 조선인은 탈출을 선택하였다.

특히, 조선인들은 집단적으로 탈출을 감행하였다. 1942년 11월 도야마(富山)현 니이가와(新川)군 소재 일본카바이트(주) 魚油공장에 동원된 조선인들(93명)은 대장, 반장 등 지도자급 15명을 중심으로 집단탈출계획을 세웠고, 후쿠오카현 이즈카(飯塚)시 소재 스미토모광업(주) 추우와이(忠猥) 광업소에서도 2차례의 집단탈출이 시도되었다. 1943년 6월 15일 후쿠오카현 온가(遠賀)군 나카마초(中間町) 소재 큐슈탄광에서는 동료 조선인의 구타를 목격하고 동료의 편에서 복수하며 항쟁한 37명 전원이 집단탈출하였고,⁴⁷⁾ 오카야마현 다마노(玉野)시의 미쓰이(三井)협화대 소속 징용 조선인 전원(72명)은 1945년 6월 29일~7월 8일 사이 16차례에 걸쳐 집단탈출하였다.

강제동원 조선인들의 탈출은 일제의 침략전쟁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였다. 일제도 ‘1942년 11월 말 홋카이도 지역 탄광에 동원된 조선인은 22,266명으로서 ‘일본인에 비해 체격 우수하고 ... 갱내작업 비율이 44%를 점하고 있고, 근래 先山에 종사하는 技能工 조선인 숫자가 점증하는 경향에 있는 등 조선인의 석탄 생산에 관한 공헌이 현저하게 크다.’고 인정하였다.⁴⁸⁾

47) [國民動員計劃に基く移入朝鮮人勞務者の狀況],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특고월보』 제33집.

48) 「參事會關係書類 昭和十八年二月十九日」, 樋口雄一 編, 『協和會關係資料集』 III, 綠蔭書房,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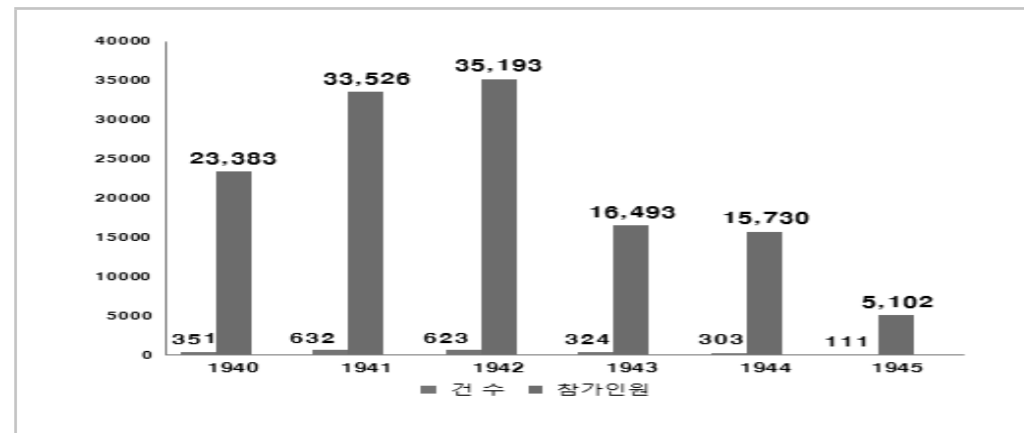
3) 노동쟁의

강제로 가족과 정든 고향을 등지고 동원된 조선인은 동원지에 도착한 이후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戰時産業의 열악한 노동 상황 속에서 民族差別을 경험하며 罷業, 怠業 및 직접적인 무력행사 등 다양한 방식의 노동쟁의를 전개하였다.

「국가총동원법」 제7조와 제33조에 의하면,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또는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의 노동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할 수 있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⁴⁹⁾ 때문에 국가총동원체제 하의 일본에서는 모든 노동단체가 해산되었고 노동운동이 완전히 끊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파업, 태업, 단식투쟁과 직접적인 무력행사 등 다양한 방식의 노동쟁의를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일제 당국은 조선인의 노동쟁의가 증가하자 이를 ‘紛爭議’로 간주하고, 일본 전역의 조선인 노동쟁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내무성 경보국은 일본 道·都·府·縣별로 노동쟁의에 참여한 인원수를 비롯하여 투쟁일수, 투쟁의 원인과 요구사항, 투쟁 수단 및 결과를 상세하게 조사하였던 것이다.

〈그림 2〉 노동쟁의 건수 및 참가인원(1940년 4월~1945년 5월)



49) 「國家總動員法」(칙령 제315호) 제7조 및 제33조, 『조선총독부관보』 제3391호(1938년 5월 10일).

위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0년 4월~1945년 5월 사이 강제동원 조선인의 노동쟁의는 2,344건이었고, 참여인원은 129,276명에 달하였다.⁵⁰⁾ 매일 약 37.8건, 매일 약 1.3건에 매일 2,085명, 매일 69.5명이 참여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동쟁의를 전개하였다.

1940년에는 351건이던 것이 1941년에는 632건, 1942년에는 623건(강제모집 520건, 관 주도 103건)으로 급증하였고, 1943년에는 324건(강제모집 50건, 관 주도 274건), 1944년(1~11월)에는 303건이 발생하였으며, 1945년(1~5월)에는 111건이 발생하였다. 강제동원 초기인 1939년부터 조선인의 노동쟁의가 시작되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 1941~42년 가장 많은 노동쟁의가 전개되었는데, 1939~40년 동원되어 2년 계약이 만기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歸鮮을 요구하며 노동쟁의를 벌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943년 이후에도 매년 300건이 넘는 노동쟁의가 전개되었는데, 이는 하루에 1건 정도의 노동쟁의가 발생한 셈이다.

참여인원 측면에서도 1940년 23,383명에서 1941년에는 33,526명으로 늘어나고, 1942년에는 35,193명(강제모집 28,671명, 관 주도 6,52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943년에는 16,493명(강제모집 1,329명, 관 주도 15,164명), 1944년에는 15,730명이 참여하였으며, 1945년에는 5,102명이 참여하였다. 1940년~1942년 시기에는 강제모집 방식으로 동원된 조선인이 노동쟁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나, 1943년 시기부터는 관 주도 방식으로 동원된 조선인을 중심으로 노동쟁의가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최악의 근로조건 속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민족적 차별을 겪으며 內鮮一體의 허구성을 자각하였고 점점 반일주의자가 되어갔다. 강제동원 초기에는 노동조건,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태업 및 무력행사 등을 벌인 노동운동 성격의 노동쟁의는 점차 진압 경찰에 직접 맞서는 적극적인 무력항쟁의 형태로 이어졌고, 민족운동 성격의 노동쟁의로 발전하였다. 또한, 노동쟁의 형태도 파업·태업 등의 형태에서 점차 직접적인 무력 항쟁의 형태가 더욱 빈번해졌다.

노동운동 성격의 노동쟁의는 점차 진압 경찰에 직접 대항하는 적극적인 무력 항

50)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特高月報』(1939년 9월~1944년 11월)와 『昭和特高彈壓史』에 수록되어 있는 분쟁의(紛爭議) 건수와 참가인원을 합산하여 정리한 내역이다.

쟁으로 발전하였다. 진압 경찰에 직접 대항하는 적극적인 무력 항쟁은 1941년 6월 이바라키현 히다치광산의 도검 탈취 및 폭행사건과 홋카이도 오유바리(大夕張)탄광의 경찰서 습격사건⁵¹⁾, 같은 해 12월 아мага타현 나가마쓰(永松)광업소의 경찰 폭행사건⁵²⁾, 1943년 8월 후쿠오카현 아소(麻生)광업(주) 요시와이(吉猥)탄광의 주재소 습격사건⁵³⁾, 1944년 10월 후쿠오카현의 카이지마(貝島) 다이노우라(大之浦)탄광의 무력항쟁사건⁵⁴⁾, 1944년 8월의 홋카이도 유베쓰(雄別)탄광(주) 모지리(茂尻)광업소紛爭사건⁵⁵⁾과 1944년 10월 스미토모(주) 본베쓰(奔別)광업소의 파업사건⁵⁶⁾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홋카이도 오유바리(大夕張)탄광의 경찰서 습격사건은 약 800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단결하여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서에 쳐들어가 投石戰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무력항쟁을 벌였고, 스미토모(주) 본베쓰광업소의 파업사건은 강제동원 조선인 1,400명이 파업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거한 것이었다.

강제동원 조선인의 노동쟁의는 노동운동 성격에서 점차 민족주의 성격으로 발전해 나갔다. 독립만이 민족 모순의 해결책임을 깨달아 민족운동의 성격을 나타내는 집단행동을 전개해 나갔다. 일제도 강제동원 조선인의 노동쟁의가 민족운동 성격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일본 內務省의 보고⁵⁷⁾에 의하면, 강제동원 조선인 가운데 不良 不純分子가 상당하여 사상적으로 不穩分子가 介在하였고, 일부 思想分子들이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을 획책하여 직접 잠입하거나 意識分子를 혼입시켜 노동쟁의를 민족적으로 선동하고 있음을 경계하였다.

민족주의 성격을 드러내는 노동쟁의는 1943년 3월과 5월 사가현의 가라츠(唐津)탄갱과 오기(小城)탄갱에서 발생한 무력항쟁을 비롯하여 1943년 2월 가나가와(神奈川)현 日本鋼管(주) 쓰루미(鶴見)제철소의 親睦會 중심의 一齊罷業사건, 1944년 6

51) [移住労働者の集團暴行事件],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특고월보』 제27집.

52) [募集に依る移住朝鮮人労働者の狀況],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특고월보』 제28집.

53) [國民動員計劃實施に依る移入朝鮮人労働者の狀況],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특고월보』 제34집.

54) [移入朝鮮人労働者紛爭發生狀況],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특고월보』 제36집.

55) 「雄別茂尻半島人爭擾事件報告」, 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 제1권, アジア問題研究所, 1982.

56) 「住友奔別鑛業所半島人労働者私刑致死並罷業事件二關スル件」, 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 제1권, アジア問題研究所, 1982.

57) 內務省 警報局 保安課, 「(極秘文書)國民動員計劃に半入朝鮮人労働者並在住朝鮮人の要注意動向」(1944년 10월), 『種村氏警察參考資料』 제107집.

월 효고현의 오타니(大谷)중공업(주) 아мага사키(尼崎)공장의 協和訓練隊特別青年會 활동, 1945년 3월 니가타(新潟)철공소 징용공들의 집단탈출사건, 1944년 히로시마현 수력발전소 건설공사에서의 재일조선인과 강제동원 조선인의 연계 민족운동사건, 1943년 4월 가와사키(川崎)제강소의 一齊罷業 사건, 1944년 9월 이시가와(石川)현의 (주)고마쓰(小松)제작소 아와쓰(栗津)공장의 항쟁, 1944년 5월~1944년 9월 朝鮮人 土工 民族主義그룹사건과 1945년 2월 홋카이도 후지와라구미(藤原組)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1944년 8월~1945년 8월 아사히가와(旭川) 토공그룹의 독립운동 사건 등이다.

5. 맺음말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강제동원자들의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일본 기업으로부터 개별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11월 1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을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아닌, 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로 부르고 있다.”라며 “당시 국가총동원법상 국가동원령에는 모집과 관 알선, 징용이 있었지만, 실제 이번 재판의 원고들은 모두 모집에 응했기 때문에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하였다. 이는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조선인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정면으로 否定한 발언이다.

일제는 ‘노무(국민)동원계획’의 일환으로 조선인을 강제동원하였다. 그들의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노동력을 식민지 조선에서 조달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지역으로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강제모집과 관 주도 그리고 징용의 방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3가지 방식 모두 일제가 주도하고 조선총독부가 깊숙이 개입한 인력동원이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다. 일본 후생성이 ‘노무(국민)동원계획’ 수립할 단계부터 조선인의 인력동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일본 후생성과 육·해군성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허가와 승인 없이는 조선인의 인력동원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일본 정부와 지방청 그리고 조선총독부와 지방 행정기구, 경찰 등이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조선인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지역 말

단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의해 도 할당-부·군 할당-읍·면 할당되는 행정체계 속에서 할당받은 동원 인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채워야했다. 때문에 폭력적이고 강제적이며, 비인간적인 동원 방식이 수반되었다. 강제모집, 관 주도, 징용 등 모든 인력동원 방식에서 계획적·조직적인 측면과 강제적·비인간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일제는 이른바 ‘內鮮一體’를 주장하며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였지만, 실제로는 宿食, 임금, 노동시간, 담당업무 등 모든 면에서 차별하였다. 조선인은 일본인과 숙사와 식당 등을 따로 사용하였다. 조선인들은 담장과 철조망이 둘러쳐진 작업장 내에 집단적으로 수용되었고, 외출이나 편지 왕래도 금지될 정도로 철저히 통제되었으며, 일상적인 구타와 폭력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또한, 조선인은 정해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숙식비나 침구료, 協和會費, 愛國貯金 등 각종 명목으로 공제되어 용돈 정도를 지급받았다. 조선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점은 “배고픔”이었다고 할만큼 당시의 식사는 육체노동을 견디기 힘든 양과 질이었다. 또한, 조선인은 역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탄광이나 광산에서는 落磐과 가스 폭발이나 가스중독, 壓死 사고, 추락 등 다양한 노동재해가 발생하였다. 조선인 사이에서는 ‘굴 안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魂魄을 짊어지고 간다.’는 말이 퍼질 정도로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죽음에 직면해 있었다. 때문에 강제동원 조선인들은 최악의 노동조건과 민족차별을 겪으며, 일제가 내세우는 內鮮一體의 허구성을 깨달았고 점점 반일감정을 갖게 되었다.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해 조선인들이 순순히 응했던 것은 아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탈출하거나 읍·면 직원과 경찰에게 보복하였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집단탈출을 비롯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징용 반대투쟁을 전개하였고, 罷業·怠業·무력행사 등의 노동쟁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였다.

특히, 강제동원 조선인은 고향 현지에서, 숙박지와 기차역 그리고 달리는 열차 등 동원되는 과정에서, 동원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탈출하였다. 그동안 탈출은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저항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일제의 戰力을 약화시키기 위한 독립운동 전략으로서 집단탈출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을 고려하면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저항의 형태였다.

조선인의 노동쟁의는 강제동원 초기인 1939년부터 시작되어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罷業, 怠業, 斷食 및 직접적인 무력행사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는데, 당시 처한 상황에 따라 쟁의방식을 바꿔가며 저항하였다. 특히, 초기에는 노동운동 성격의 노동쟁의를 벌였으나, 점차 경찰에 직접 맞서는 항쟁의 적극화가 진행되었고, 마침내 ‘독립만이 민족 차별과 식민지 모순의 해결책’임을 깨달아 민족운동 성격의 노동쟁의로 발전하였다. 일본 내의 모든 노동단체가 해산되고 노동운동이 완전히 끊긴 파시즘 총동원체제 하에서 전개된 강제동원 조선인의 노동쟁의는 민족적 자각 하에 전개된 반전반제투쟁이자 항일 독립운동이었다.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경제적 수탈과 민족말살정책’이라는 일관된 식민정책의 연장선에서 수행된 반인륜적 인력 수탈정책이자 조선민족 말살정책으로서, 식민정책의 최종착지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조선인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있다.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자료를 통해 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조선총독부 자료를 통해 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1. 들어가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조선총독부나 타이완총독부 자료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전시총동원체제 정비를 통하여 전쟁 수행의 일부를 담당했던 식민권력이 일본군‘위안부’제도에 개입된 정황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로서 주목받았다. 이 가운데 타이완총독부 자료는 1990년대부터 일본 외무성이나 타이완성 문헌위원회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을 요시미요시아키(吉見義明)나 일본정부, 주더란(朱德蘭)이 조사, 정리하여 일본군‘위안부’관계 자료집 안에 포함하여 발간한 바가 있었다. 이를 통해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의 ‘남방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되었던 타이완에서는 타이완총독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위안소 업자 및 ‘위안부’의 ‘남방’ 진출 상황을 통제, 관리하고 중국 광둥성 하이난에 해군위안소를 개설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타이완총독부는 겹겹의 하청을 통해 민간업자의 뒤에 숨는 은폐의 방식으로 개입했으며, 하이난에 보내는 ‘위안대’를 ‘특요원’이라 고쳐부르는 등 가급적 ‘위안부’라는 호칭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문서를 작성했다.

타이완총독부 관계 자료에 비해 조선총독부 관계 자료는 그동안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일본 패전 후 일본측이 문서를 소각했을 가능성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자료를 더욱 잃었을 가능성, 또는 자료접근 제약이 큰 분단 현실이 그 배경으로 제기되었다. 타이완보다 더욱 ‘후방’의 위치에서 군사작전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이라는

병참기지의 역할을 담당한 당시 조선의 특수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전투지, 점령지, 괴뢰정권(또는 친일정권) 지배지, 식민지 등의 순으로 직접적인 군사행동이 벌어지는 지역일수록 일본군이나 일본정부의 개입이 간접적이거나 은폐되는 양상을 보이는 사실은 일본군·위안부 제도와 식민지 문제를 생각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될 터이다.

2. 연합군이 입수한 조선총독부 관계 자료

일본군·위안부 관계 조선총독부 자료는 동원이나 이송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 많다. 재미 사학자 방선주 박사는 1990년대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입수한 일본군과 조선총독부의 암호문을 발견했다. 영어로 번역된 이 문서는 내몽고 장자커우에 주둔한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을 위해 조선총독부에 보낸 자금을 사정이 생겼으니 돌려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할당액을 포함한 자금을 몽강은행을 통해 보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선총독부가 일본군으로부터 ‘위안부’ 동원 자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실제로 1944년 8월 버마에서 연합군의 포로가 된 위안소 업자 기타무라는 경성에서 ‘레스토랑(restaurant)’을 운영하던 중 조선군 사령부의 의뢰를 받고 ‘위안부’ 동원 허가를 받았으며 조선인 여성 22명을 구매했다(purchased)고 진술했다¹⁾.

3. 조선총독부의 도항 통제 자료

조선인·위안부의 이송 배경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자료에 가장 먼저 접근한 연구자는 요시미 요시아키이다. 그는 1992년 大月書店에서 발간한 『從軍慰安婦資料

1) SEATIC, 「Interrogation Bulletin No. 2 (Psychological Warfare)」, 1944. 11. 30. 기타무라는 1942년 7월 10일 버마를 향해 부산에서 출발했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은 조선군사령부가 제공한 서한(letter)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集』에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1942년에 각 기관에 송부한 중국 도항자 신분증명서 발급 상황 문건 2건을 수록하였다(156-159쪽). 모두 일본 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이다. 자료집에는 ‘위안부’와 관계된다고 여겨지는 부분만 발췌하였는데, 1941년 하반기와 1942년 상반기에 중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경찰서로부터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 요리옥 및 음식점 업자, 가시자시키 업자, 여급 및 나카이(仲居), 예창기 수를 나타낸 표이다. 곧 위안소나 ‘위안부’라는 말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도 이들 중에 위안소 업자 및 ‘위안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요시미 요시아키는 1993년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를 방문하여 조선총독부 외무과 자료(1938~1939년)를 검토하고 그 중 6건을 1994년 9월 「중군위안부」와 송출-한국에 있는 총독부 관계 자료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²⁾. 그 결과 현지 총영사관 → 외무성 → 척무성 → 조선총독부라는 경로로 정보, 요청, 지시가 통보되고, 이 방침을 받아 조선총독부 경무국장과 각도 지사를 적극적으로 도항자 송출에 협력했음을 밝혀냈다.

현재 한국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서는 조선총독부 외무과가 편철한 『쇼와13년~쇼와14년 여권 예규(동양)』의 문서철 문건 102건 가량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1938~1939년 전지·점령지 지역 이동과 관계된 문건은 60여건이다. 요시미요시아키가 검토한 한커우, 지난, 광둥, 샤먼 지역 이외에 산터우, 하이난, 하이저우, 톈진 등으로 가는 도항자의 단속 관계 자료와 전염병 예방주사 증명서에 관한 자료들이다. 이들 자료들은 조선인·위안부가 최초의 단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동원되었든, 위안소에 이송되기까지 본적지 관할 경찰서에서 형식적으로 신분확인을 받고 경찰과 군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음을 입증한다. 공권력에 의한 조선인·위안부 동원 관리, 통제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4. 조선총독부의 형사 사건 자료

조선인·위안부의 동원 배경과 관련해서는 조선총독부 법무, 경찰 기관에서 생산

2) 吉見義明, 1994, 「『從軍慰安婦』と送出一韓国にある総督府関係資料について」, 『戦争責任研究』5, 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한 형사 사건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형성된 인신매매 매커니즘 하에서 이뤄졌던 영리유괴·제국외이송유괴 관련 형사판결문과 ‘위안부’ 동원 관계 전시체제기 조언비어(造言蜚語) 관련 판결문 및 경찰관계 문건들이다. 조선인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이점, 곧 취업사기나 감언이설을 통한 동원이 상당수이고, 최초의 모집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든(업주든, 브로커든, 통역자의 형태이든지간에) 조선인이 개입되는 양태가 많이 보인다는 점이 접근 배경이 됐다. 곧 영리유괴나 제국외이송유괴의 사건 전개 과정 속에서 위안소 보내진 피해자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거나 마을 이장·구장이나 시군구 공무원, 경찰, 인사소개소나接客점 업주, 브로커가 얽힌 동원의 매커니즘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됐던 것이다. 또한 조선인 ‘위안부’ 동원이 ‘정신대 동원’, ‘처녀공출’이라는 명명과 혼동되고 있다는 점, 전시체제기에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조흔을 한 사례가 많았다는 당대인들의 기억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조언비어 범죄와 관련된 형사판결문 또한 주목을 받았다.

1) 국외이송유괴 피고 사건 판결문

국외이송유괴 피고 사건 자료가 일본군 ‘위안부’ 관계 자료로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일본에서 2000년 전후 발견된 판결문 때문이다. 일본인과 중국인으로 구성된 피고인 10명은 1932년 나가사키에 사는 일본인 여성 15명을 유괴하여 상하이에서 설치되는 해군위안소의 위안부가 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1936년 나가사키지방법판소에서 국외이송유괴와 공동정범 피고 사건으로 다루어져, 피고인이 최고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지는 중형을 받았다(戸塚悦朗a, 2004; 戸塚悦朗b, 2004). 1932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1심은 나가사키지방법판소에서 1936년 2월 14일에, 2심은 나가사키항소원에서 1936년 9월 28일, 3심 대심원 판결은 1937년 3월 5일에 있었다. 상하이의 해군위안소 업자로서 최종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무라카미도미오(村上富雄)는 상하이 메이메이리 26번지에서 해군위안소 아케보노(曙)를 운영했던 인물이다. 1939년과 1940년, 1942년에도 여전히 아케보노 업주로서 상하이 지역 재류 일본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것을 보면, 형량을 모두 채우지 않고 나와서 계속해서 해군위안소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지나재류방인인명록 28판(1936), 29판(1939), 30판(1940), 32판(1942)』. 유괴 혐의로 중형을 받았다 해도 일본군으로부터

여전히 신뢰를 받았다는 얘기가 된다. 최근 송연옥의 연구(송연옥, 2019: 49)에 따르면, 무라카미의 위안소에서는 1932년 1월부터 위안부가 되었던 이봉석이라는 경북 출신 조선인이 있었다. 1934년 4월 연령이 21세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처음 ‘위안부’가 된 시점인 1932년에는 19세였다고 볼 수 있다. 국제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시기에 해군위안소의 위안부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판결문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관한 불법성을 다룬 최초의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1932년에 생긴 사건을 1936년과 1937년에 다루었다는 점이다. 중일전쟁 후인 1937년말과 1938년초에 ‘황군위안소에 보낼 작부 모집’을 운운하며 일본인과 조선인 여성을 동원해 상하이로 보낸 업자들에 대해서 각 경찰서, 경보국장, 외무성, 육군성이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내무성 경보국장이 1938년 2월 18일 「支那渡航婦女の取扱に関する件」을 통해 1937년 12월 재상하이일본총영사관, 헌병대, 육군무관실이 합의한 결과 군위안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사실상 성매매 종사자로서 만21세 이상, 성병 기타 전염병에 없는 자에 한해 중국 북부나 중부에 가는 자를 묵인하기로 했는데, 최근 여성 모집을 하는 자들이 군 당국의 양해를 얻은 듯 말을 하고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는 통첩을 내었다. 그리고 일련의 검토를 거쳐 나오게 된 것이 1938년 3월 4일에 육군성 부관 통첩으로 나온 「軍慰安所従業婦等の募集に関する件」이다. 이들 자료를 분석한 나가이카즈(永井和)는 “이 통첩은 한편에서 ‘위안부’의 모집과 도항을 용인하면서, 군, 즉 국가와 위안소의 관계 은폐를 업자에게 의무화시켰다..... 공인과 은폐의 이중 잣대가 경보국의 방침이며 일본 정부의 방침이었다”고 결론지었다(戸塚悦朗a, 2004: 39에서 재인용). 곧 1938년 이후 일본군의 관여 하에 위안소를 개설할 것을 확정하되, ‘위안부 모집’에 일본군이 관여한 것을 입에 담는 것을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지는 것이다.

1936년 나가사키재판소 판결문을 분석한 도츠카에츠로는 ‘식민지였던 조선이나 타이완으로부터의 해외도항은 동일한 금지조치가 취해진 흔적이 없다. 일본에서는 군 ‘위안부’의 국외이송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식민지에서는 불처벌의 상태로 두었다. 조선의 법원에서 그러한 처벌 예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많은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배경이었다’(戸塚悦朗a, 2004: 44)라고 설명하며 조선에서는 ‘위안부’ 이송을 둘러싸고 국외이송유괴 처벌이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요시미 요

시아키도 “1937년 중일 전면 전쟁이 시작되어 군위안소가 광범위하게 설치되는 가운데, 이 제226조[국외이송유괴죄-박정애]가 적용된 사례는 그 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요시미요시아키, 2012: 33).

그러나 1937년 이후 국외이송유괴 사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형사 판결문을 확인한 것만도 11건이다. 대부분 중국 동북부 지역(만주)으로 매매한 건이며, 이 가운데 1935년 2월 16일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쇼와20년형공합제2호)은 문서 속에 ‘위안부’와 ‘위안소’가 등장하는 사건이다. 피고인 하산정웅(夏山政雄)은 1944년 9월 만18세 여성을 감언이설로 피어 전남 순천의 요리점 희락별관에 작부로 매매하려고 하였다. 일본 에이메현에 본적지를 둔 요리점 주인인 시미즈(清水種福)는 만주 아청(阿城) 소재 위안소인 희락지점에 “위안부(창기)”고 쓰겠다고 말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주국에 이송시키는 것을 결의하고 시미즈로부터 전차금 3,500원으로 희락지점에 위안부로서 고용하는 것을 승낙받고 피해자를 시미즈에게 인도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국의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괴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영리유괴죄(형법 제255조)와 국외이송유괴죄(제226조)로 물어 형이 무거운 후자의 죄로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였다. 반면 선불금 3,500원을 하산정웅에게 주고 자신이 경영하는 위안소에 피해자를 ‘고용’했던 시미즈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피해자 이송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았던 1936년 나가사키재판소 판결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형제 제226조는 “제국 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괴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국 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고, 또 유괴된 자(被拐取者) 혹은 팔린 자(被賣者)를 제국 외로 이송한 자 역시 같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안소 업자를 “제국 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자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법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1944년 당시 만18세로 국제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나이였다.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제국의 이송 유괴 사건은 1936-1935년 일본 법원의 사례처럼 불법성과 처벌강도만을 따질 수 없다. 1937~1938년을 거치면서 일본군‘위안부’제도는 체계화되었고, 이때 형성된 일본군과 일본정부의 방침은 통제되는 민간인을 내세우고 공권력의 개입은 은폐하는 ‘공인과 은폐’였다. 따라서 전시총동원체제

기 제국의 이송유괴와 관련된 사건들은 공권력의 ‘은폐된 관리와 지원’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냐에 따라 그 가치가 재고될 수 있을 것이다.

2) 조언비어죄 관계 자료

전시체제가 조선에서는 일본의 공권력에 의해 동원된 조선인 여성은 병사에 대한 ‘성적 위안’을 강요당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이 전시의 조선에서 사람들이 이 입으로 유통했던 정보 가운데 일본의 전쟁수행과 식민지통치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조언비어(造言蜚語)로서 엄하게 단속하였다. 조언비어는 말 뜻 그대로 그것이 허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군사상 또는 치안유지상 ‘유해’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었다³⁾. 형벌에는 경찰범처벌규칙이나 주로 육군형법 제99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금고 처벌 받았다. 태평양전쟁 개전 후에는 거의 조선임시보안령 또는 안녕질서에 대한 죄가 적용되었다.

1939년 9월 신순임은 경성지방법원에서 경찰범처벌규칙 위반으로 구류 7일을 처분받았다. 신순임은 “가정이 빈곤하여 부모의 뜻에 따라 1938년 3월 부내 서대문정서만규의 중개로 중지 난징 소재 황군위안소의 창기가 되어 본년 8월 중순 귀선한 자인데 8월 28일 서상만에게 “제일선의 창기는 군인과 함께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어서 실로 위험하므로 금후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황군위안소의 창기는 되지 않겠다”고 유언을 했다. 종로경찰서가 취조함에 본인은 1일 70명 정도의 소님을 받은 관계상 신체에 무리가 생겨 식욕이 감퇴하고 복통 요통이 있어 신체가 쇠약하고 병으로 누워있는 것이 여러 차례이므로 본년 8월 중순 전차금을 모두 갚고 조선으로 돌아온 것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이 자료는 분석한 후지나가 다케시는 이때의 ‘유언(流言)’이 명백한 ‘유언’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경험한 ‘사실’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藤永壯, 2013: 740). 가혹했던 위안소 생활에 대한 진술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치안상 이유로 조언비어죄로 다루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조언비어 사건이 주로 육군

3) 일본에서는 만약 사실을 말했다 해도 ‘군사상 유해한 언사’라고 판단되면 육군형법의 ‘조언비어’로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도 적용되었을 것이다(藤永壯, 2013: 724).

형법 제99조 위반으로 다뤄진 것에 대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경찰이 ‘동정할만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류 7일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정벌이 과해졌다고 했다⁴⁾.

1942년 3월 산본재덕은 “현재 헌병대가 싱가포르 방면행 대좌부 영업자를 모집 중인데 이미 제1회분은 출발했고, 제2, 제3, 제4회 정도까지는 헌병대에서 허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평양지방법원에서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벌금 500엔을 선고받았다⁵⁾. 앞에서 살펴본 1944년에 버마에서 연합군 포로가 된 기타무라의 심문 내용을 상기하면, 1942년에 조선군사령부에게 의뢰와 허가를 받고 ‘위안부’를 동원하여 같은 해 7월 10일 제4차 위안단으로서 부산을 출항한 703명의 위안소 업자, 조선인 여성들이 있었다. 기타무라는 자신과 같은 접객업 업자들에게 조선군사령부의 제안이 하달되었다고 말했으며, 산본재덕은 여관업 종사하였다. 곧 같은 업종의 접객업 종사자로서 산본재덕은 대좌부, 곧 가시자시키 업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했고, 이를 발설했다가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처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방면행이라는 발언을 미루어 부산에서 출발하는 업자를 모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산본재덕과 기타무라의 말을 종합하면, 1942년 헌병대의 통제 하에 제1차 위안단이 3월 이전에 출발했고, 7월 10일에 제4차 위안단이 출발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5. 공창제 관련 자료

마지막으로 일본군‘위안부’관계 자료로서 공창제 자료들이 있다. 이는 스즈키 유코(鈴木裕子) 등이 2006년에 편찬한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上)』(明石書店)에서 야마시다영애(山下英愛)가 조선 관계 자료를, 주더란(朱德蘭)이 2001년에 편

4) 경찰범처벌규칙(1912년 3월 25일 공포, 4월 1일 시행, 조선총독부령 제40호) 제1조 제21호에 규정된 “사람을 속일(誑惑)만한 유언부설 또는 허보를 하는 자”에 대한 형벌은 구류 또는 과료이다.

5) 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1943, 『大東亜勅発後に於ける特殊犯罪調査』, 74쪽.

찬한 『台湾慰安婦關係資料集』(不二出版)에서 타이완 관계 자료를 수록한 바 있다. 일본군‘위안부’제도가 부국강병을 위한다는 명분의 국가주의, 근대 위생 이데올로기, 제국 일본 각 영역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차별적 구조화의 거부장제, 여성을 타자화하는 성 차별주의에 기반하여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운용된 공창제의 전시(戰時) 버전이라고 했을 때, 그 관계 자료로서 공창제 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평시 공창제와 전시 공창제의 변용 및 일본군‘위안부’제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지역의 자료만을 정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나아가 불필요한 정쟁·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창제 관계 자료는 일본이나 식민지, 조차지, 위임통치 지역, 점령지 등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쳤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6. 나오면서

일본군‘위안부’제도 관계 자료를 수집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피해가 반드시 자료상에 위안소나 ‘위안부’라는 용어를 동반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관할 경찰이나 헌병대에 대좌부, 요리점, 카페라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어도 공공연하게는 위안소라 인식된 경우가 있다. 송연옥이 밝힌 바와 같이 현지의 유곽이나 특별요리점 등이 위안소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도 있으며,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지의 군인은 해당 업소에 제재 없이 드나들 수 있었다. 그리고 공문서 상에서 위안소에 있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더 자주 사용된 말이 ‘작부’, ‘창기’ 등이다. 따라서 위안소나 위안부라는 키워드만으로 ‘위안부’관계 자료를 찾고자 하는 것은 역사상 실태를 외면한 무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별, 지역별, 정치상황별에 따른 당대의 실정을 이해하고 ‘위안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치밀함과 피해자 관점으로 시대적 맥락과 행간을 독해하고 이해하는 독자의 역사적 상상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高等法院検事局思想部, 1943, 『大東亜勃発後に於ける特殊犯罪調査』, 高等法院検事局思想部.
- 吉見義明, 1994, 「「従軍慰安婦」と送出一韓国にある総督府関係資料について」, 『戦争責任研究』5, 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 藤永壮, 2013, 「戦時期における「慰安婦」動員の「流言」「飛語」をめぐって」, 『地域社会から見る帝国日本と植民地』, 思文閣出版: 東京.
- 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 2006, 『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上)』, 明石書店.
- 신영숙, 2017, 「재판 자료로 본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집 구조」, 김경일 외 지음, 『동아시아 일본군‘위안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요시미요시아키 지음, 이규태 옮김, 1998, 『일본군 군대위안부』, 소화(원 저서는 岩波書店에서 1995년 발간).
- 윤명숙, 2015,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 제도』, 이학사.
- 前田朗, 1998, 「国外移送目的誘拐罪の共同正犯一隠されていた大審院判決一」, 『季刊戦争責任研究』18, 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 戸塚悦朗a, 2004, 「戦時女性に対する暴力への日本司法の対応、その成果と限界:発掘された日本軍「慰安婦」拉致処罰判決(1936年)をめぐって(上)」, 『季刊戦争責任研究』43, 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 戸塚悦朗b, 2004, 「戦時女性に対する暴力への日本司法の対応、その成果と限界:発掘された日本軍「慰安婦」拉致処罰判決(1936年)をめぐって(下)」, 『季刊戦争責任研究』44, 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 戸塚悦朗c, 2004, 「日本軍「従軍慰安婦」被害者の拉致事件を処罰した戦前の下級審刑事判決を発掘一資料 国外移送誘拐被告事件に関する長崎地方裁判所刑事部昭和一年二月一四日判決」, 『龍谷法學』37(3).
- 송연옥, 2019, 「역사학 연구에서 재고하는 위안부 문제: 상하이 일본군 위안소 사례로부터」, 서강대 트랜스내셔널 심포지움 ‘전쟁, 여성, 폭력: 일본군‘위안부’를 트랜스내셔널하게 기억하기’ 자료집.

강제동원 피해실태와 자료

토론문

한혜인(성균관대)

황병주(국사편찬위원회)

사료의 언어와 기억의 언어 속의 사실(史實)

「강제동원 현황과 거부투쟁」을 읽고

한혜인(성균관대)

1. 사법의 논리와 역사적 사실

조선인 강제동원의 문제는 사료의 언어와 기억의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극대화된 것은 일본의 전쟁책임, 식민지 지배책임을 방기해온 역사가 그 원인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학술적 연구보다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이 문제가 사회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의 결과는 한 공동체의 미래지향적 지향점을 정의롭게 구축해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 재판의 과정에서는 일정한 ‘원고’의 피해 사실이 주된 피해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원고가 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두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구체적 피해 사실은 제한된 협의의 강제, 폭력, 불법이 판단되었고, 이러한 사실들이 담론화되어 강제동원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그 이전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운동을 포함해서) 그래서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형성된 강제동원 피해자 이미지와 함께, 원고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다른 케이스의 사실을 들어, 전체를 전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방법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많은 부분을 배제하면서 형성된 사실이라는 점을 말해두고 싶습니다.

강제동원이나, 일본군‘위안부’의 피해자는 다수이고, 그 다수의 개인적 피해경험

은 매우 다릅니다. 제도의 언어 역시 매우 다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기억도 체제적 순응과 그 안에서의 거부 등의 기억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식민지 지배, 전쟁수행이라는 체제적 불법과 비합리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도에 적응을 잘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체제적 불합리성의 피해자임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의 연구는 개별적으로 얼마나 강제적 상태에 놓여있었는가 보다, 그 체제, 즉 식민지 체제가 얼마나 목적 중심적인 체제인지, 그리고 식민지민이 제국의 신민과는 달리 어떠한 「예외적 상태」 즉, 「법률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교차하는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경계선에 놓여 있었는지」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강제동원의 실태를 동원지, 동원 연령, 동원시 업무, 저항, 탈출 등 모든 범주의 미시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한일의 강제동원 연구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검토할 것은 본 논문에서 충남지역은 일본의 홋카이도지역과 큐슈지역으로 많이 동원되었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제동원시기(1939년~1945년)의 동원은 초기 동원에서 가장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산업은 석탄 산업 그에 따른 토목업이었습니다. 다른 전시산업, 즉 광업, 공업 인구도 부족했지만, 사실 광공업 등은 조선인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홋카이도와 큐슈의 석탄산업이 조선인 노무동원을 적극 요구했고, 그 요구를 받아서 세운 계획이 기획원의 1939년부터의 「노무동원계획」입니다. 따라서 당시 동원대상이었던 조선남부 지역을 선생님의 방법과 같이 조사하면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경기도 지역만 남양, 사할린 지역으로 동원되는 수가 많을 뿐 각 지역별로 홋카이도와 큐슈지역으로의 동원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제적으로 홋카이도와 큐슈가 가장 제도적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관련 정책 사료, 회사사료도 가장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적으로 나누어 미시적으로 분석은 전체 강제동원의 실태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본 글에 대하여 몇가지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볼 문제를 짚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미성년자 강제동원 해석에 관한 문제

본 논문의 분석 대상으로 한 명부는 다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 ① 『朝鮮人勞働者に關する調査結果』(15권), ② 『いわゆる朝鮮人徵用者に關する名簿』(6권)와 ③ 『日帝下被徵用者名簿』(3권)

본 명부 중 ①과 ②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정부가 1946년에 각 도도부현에 조사의뢰하여 16현 분의 조사결과입니다. 이 조사결과에는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는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③의 명부는 1990년 노태우 방한을 앞두고, 일본 내에서 다시한번 명부조사를 행하였고, 당시 홋카이도는 오비히로(帯広) 토목현장소에서 작성한 『조선인노무자명부』148명분(홋카이도립문서관 소장), 각 광업소에서 작성한 『반도인노무자명부』등 6,551명분(홋카이도개척기념관 소장), 각 광업소에서 작성한 『조선인노동자명부』411명(홋카이도립도서관 소장), 각 광업소에서 작성한 『피보험자 자격취득철』2,588명분(몬베츠(紋別)시 향토박물관 소장), 아카비라(赤平)시의 안전 평화기원제의 『합사순직자명』, 홋카이도의 탄광이 작성한 『광업소별 과거장』등을 포함하여 총 10,262명분의 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①과 ②의 조사목적은 미군정의 목적, 일본 내 조선인 귀환과 미불금 조사 그리고 일본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시 실손조사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 조선인 뿐 아니라, 부양가족도 포함되어 있는 명부임을 우선 밝힙니다. ③은 홋카이도의 조선인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도 포함되어 있어 여성명도 존재합니다. 모두 강제동원(1939-1945)년 동원자라기 보다, 1939년부터 1945년에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된 노동자의 가족의 명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부의 속성을 보다 엄밀하게 보지 않으면, 실태를 판단할 때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지역 강제동원자 연령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셨습니다.

- ① 강제동원 연령이 “9~63세,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이하는 1,149명(15.0%)
② 징용대상 연령 미성년자(9~15세) 36명과 노인(51~63세) 160명 등 총 196명

(2.6%)이었다. 특히, 현재의 초등학교생 연령인 어린아이(23명; 9세 2명, 10세 2명, 11세 2명, 12세 5명, 13세 12명)와 환갑이 넘은 노인(2명; 62세 1명, 63세 1명)도 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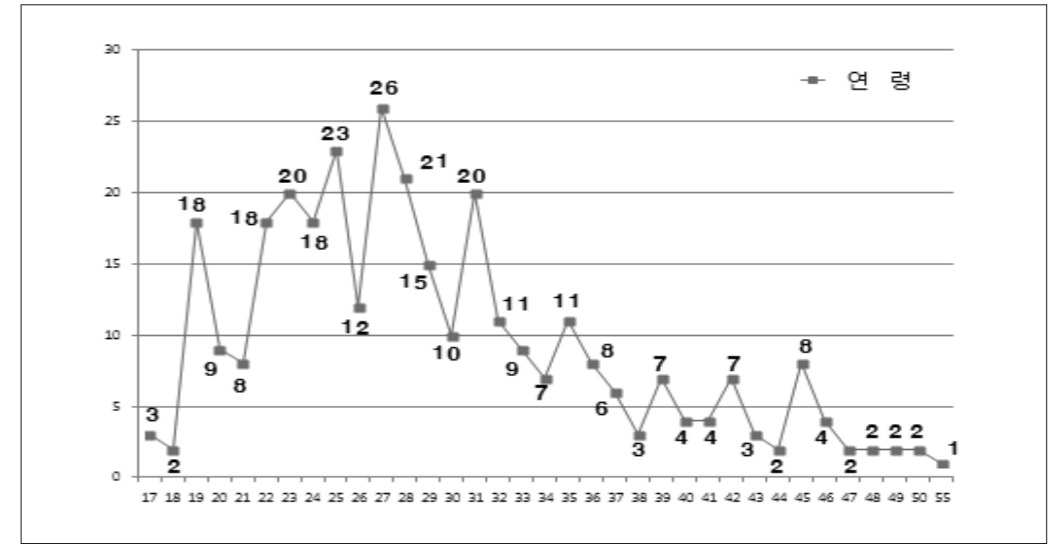
물론, 각 회사는 도망방지를 위해 1940년에 들어서면 홋카이도지역과 사할린 지역은 가족부르기(かぞくよびよせ)정책을 추진합니다. 가족을 불러, 가족노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족부르기 정책도 강제동원정책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1940년도 「청소년고입제한령」에 따라, 12세 이상 전 시산업에 우선고용이 가능했고, 조선에서도 1941년도에 실시됩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미성년자 노동의 성격 때문입니다. 이 청소년 노동에 관련해서는 동원의 방법이 가족부르기 정책에 의한 것이라면, 엄밀하게는 미성년 노동에 대한 책임은 고용한 회사 책임이지만, 국가가 계획적으로 미성년을 고용했던 「청소년고입제한령」에 의한 노동은 국가가 관여한 미성년 노동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강제노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동원의 방법이 달랐다고는 하더라도 미성년 노동의 범죄성은 일관된다는 점에서 이 점을 밝히신 선생님의 연구는 매우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징용령 위반 사례 분석의 유용성

수동적 강제동원의 피해자만의 역사에서 징병과 징용에 대한 거부투쟁의 역사를 밝힘으로 전시체제기의 조선인의 다른 한면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 징용령 위반 사례는 전국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선생님이 분석하신 충남의 경우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징용령 위반 사례에 대한 다음 그래프는 좀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1) 이 그래프의 위반사건의 연도는 언제인지요? 전면징용령이 내려진 후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인가요?
- 2) 1944년 동아광업 징용 사건 중, 19세의 동원이 미성년동원이라는 판결은 당시 법정미성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이고, 동원대상이 16세 이상이라는 조건에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 3) 충남부여군의 55세 고령자를 국민징용령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4) 징역형이 선고된 이후, 집행유예기간은 없었는지요?
- 5) 벌금형의 경우, 벌금의 액수가 다른 이유를 알 수 있는지요?

4. 용어의 문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강제동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는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조선인에 대한 전시동원(군인, 군속, 노무자)과 중국인 노무동원을 일컫었습니다. 일본 정부측에서는 징용공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 속에서는 ‘피징용피해자’로 일컬어지다가, 1966년 한국정부는 「강제징용」이라

는 말로 정리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피징용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군인, 군속, 노동자를 모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어로는 징용이라는 말로 표현되다가 2004년 법제정과 더불어 한국정부는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강제징용이라는 말은 일본정부가 징용공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라는 용어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노무동원피해자만을 일컫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일청구권협정의 논의는 피징용피해자라고 명명하면서, 군인, 군속은 약 242,341명으로 보았습니다. 노동자 피해자는 한일 모두 667,684명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소위 1939년 「노무동원계획」, 1942년 「국민동원계획」에 의해 동원된 동원수 중 실제로 사업체에 고용된 수와 일치합니다. 당시 계획수는 900,800명이었는데, 그 중 실제로 조선에서 도향한 숫자는 702,867명 실제로 일본기업체가 고용한 숫자는 667,684명입니다. 일본기업체 고용수는 특고에서 관리했던 수입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일본이 제시한 숫자는 특고가 관리했던 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약 4만명 정도는 강제동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청구권협정 속에 포함되지 않은 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총독부 자료를 통해 보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토론문

황병주(국사편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자 젠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또한 제국-식민 관계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특히 ‘조선인 위안부’의 경우 식민지라는 현실에 직접 규정당하는 존재였다. 그렇기에 식민지를 총괄적으로 지배했던 조선 총독부 관련 자료가 ‘위안부’문제를 해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러 사정상 총독부 자료가 많이 발굴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발표문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총독부 자료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설명해줌으로써 향후 더 많은 자료의 발굴과 더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도향 관련 자료에 대해

‘위안부’동원과 관련해 대규모의 총독부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도향 관련 자료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위안부’로 동원되는 사람들을 취급하는 것을 꺼려했기에 여권발급 등을 포기하고 군에 모든 책임과 권한을 돌리고자 하였다. 결국 ‘위안부’를 국외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도향 허가가 필요했고 그 관련 문서가 발굴된다면 위안부 동원 규모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도향 관련한 상부기관의 자료도 중요하지만, 일선 경찰서 차원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통해 위안부 동원 규모 등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된다. 관련하여 더 많은 총독부 자

료의 발굴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2. 『매일신보』 위안부 모집 광고에 대해

『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관지였기에 넓은 의미에서 총독부 자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매일신보』에는 1944년 위안부 모집 광고가 게재되기도 했다. 비슷한 광고는 『경성일보』에도 나타난다. 모집 광고는 공교롭게도 두 신문 모두 1944년에 한 건씩 확인되었는데, 시점도 시점이지만 총독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두 신문에 군 위안부 모집 광고가 게재되는 맥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944년 7월과 10월에 광고가 게재되었는데, 이 시점이면 전시 총동원체제가 절정에 달한 상황이자 일본의 패망이 가시화되는 국면이라고 하겠다. 게다가 여러 경로로 위안부의 실상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위안부 동원이 점점 곤란해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 한다.

3. 형사사건 관계 자료에 대하여

발표자는 일본의 ‘위안부’동원이 1937~8년을 거치면서 체계화되고 민간인을 내세워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했음을 강조했다. 즉 ‘공인과 은폐’가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전투지→점령지→피퇴정권의 순서로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개입이 간접적이거나 은폐되는 양상임을 지적한 것도 매우 시사적이다.

이때 은폐는 주로 경제적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군사적, 행정적 직접 개입 대신 시장의 경제관계를 이용한 ‘위안부’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 우익 등 일부에서 강변하고 있는 ‘위안부’동원의 비강제성의 주요 근거로 거론되기도 한다. 일본군이 의도했던 바가 바로 이러한 주장들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고자 한 것임이 분명하다. 일본의 입장에서 총독부의 식민지배질서는 자신들의 법률에 따른 합법적 질서였다. 즉 식민지 역시 일본의 법역이다. 따라서 ‘위안부’동원 역시 식민지배질서의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일본군과 총독부는 한 발 뒤로 물러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모습을 보

여줌으로써 ‘위안부’동원과 무관한듯한 상황을 연출한 셈이었다. 다시 말해 위안소 업자들의 탐욕과 불법행위만이 문제로 부각되고 그 탐욕과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권력의 정당성이 부각된다. 요컨대 식민지의 합법성이라는 함정을 파놓은 셈이다. 실제 위안소 업자들은 사법 당국의 관리와 취체 대상이었고, 마닐라 지역 경찰 보고서는 업자들의 탐욕이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사태를 호도하는 당국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총독부 사법관계 자료들은 역설적인 효과를 낸다고 보인다. 총독부가 ‘위안부’동원과 관련된 불법행위들을 단속 처벌한 것은 그만큼 불법행위들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법적 제재 사례들은 ‘위안부’동원의 불법적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자 일제의 합법적 동원의 실상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불법적 행위는 언제나 합법적 행위의 연장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배경의 핵심은 돈이다. 일제의 전시총동원체제는 돈의 흐름을 통제하면서도 돈의 흐름을 이용한 지배였다. 위안소 운영 역시 업자가 ‘위안부’를 고용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형태가 많았다. 이러한 ‘반인도적 합법성’이 관찰되는 양상은 일종의 빈곤의 정치이기도 할 것이다. 빈곤을 매개로 사회적 약자를 합법적으로 ‘위안부’로 동원하는 야만의 지배방식이 식민지의 또 다른 현실이었다.

결국 합법적 경제행위의 결과가 위안소와 ‘위안부’문제라면 그것이 가능했던 식민지배질서 전체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요컨대 ‘위안부’문제를 포함한 식민지배는 합법과 불법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총독부의 형사사건 관련 자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전후처리와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인식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의 전후처리와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인식¹⁾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한국은 194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했고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간에는 역사문제²⁾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으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역사문제에 대한 한일 간 인식의 차이는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일본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차이를 잘 보여준다. 여론조사 결과³⁾를 보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포함해 과거사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 하나’라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는 9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지만 일본인은 49%가 ‘그렇다’고 답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에 대해서도 ‘일본이 충분히 사죄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1%에 불과했지만 일본인은 65%로 나와 5년 전 조사(55%)보다 크게 늘었다. 식민지 지배 피해 보상 문제에서도 ‘일

1) 본 발표문은 『The Japanese Government's Post-war Settlements and Recognition of History』(『Yearbook of the Institute of East-Central Europe』제16권 2호)에 게재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2) 한일 간 역사문제란 기본적으로는 1910년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에 기인하는 문제다. 일본이 한국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배상·보상했는지,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대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역사문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본 총리 등 정치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청구권 소송,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기술, 일본 정치가의 역사 왜곡 발언 등의 형태로 표출되어 왔다.

3) 『동아일보』2015.6.18

본이 식민지배 피해자 보상을 재검토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한국인은 89%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일본인의 69%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본고의 목적은 일본 정부의 전후처리 실태와 역사인식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검토에 있어서는 전후처리는 ①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보상을 했는가, ②개인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인식 문제는 ③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는 무엇인가, 즉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는가, ④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으로 평가받는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는 계승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일본 정부의 전후처리와 역사인식에 대한 공식 견해

일본 정부는 2005년 8월 12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일본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전후처리'를 했다는 주장을 담은 '역사문제 Q&A' 게재를 시작했다.⁴⁾ 외무성은 '역사문제 Q&A'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목적에 대해 '전후 60년을 맞이하여 역사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우리정부의 입장을 정리,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정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⁵⁾ 그러나 '역사문제 Q&A'의 영문판이 2006년 1월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목적이 외국인에게 일본 정부가 실시한 '전후처리'와 역사인식의 정당성을 홍보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歴史問題Q&A'(http://www.mofa.go.jp/mofaj/area/taisen/qa/index.html)

- 문1. 지난 대전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떠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가?
 - 문2. 일본은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 공식적으로 사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문3. 일본은 지난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배상을 했는가?
 - 문4. 정부 간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 해도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 있지 아니한가?
 - 문5.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6. '난징(南京)대학살'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문7.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문8. 독일과 비교해서 일본은 과거 문제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것은 아닌가?
- 2005년에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2건과 역사교과서 1건 등 총 11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되었다.

5)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언론보도자료' (http://www.mofa.go.jp/mofaj/press/release/17/rls_0812a.html)

'역사문제 Q&A'에 나타난 일본 정부의 '전후처리'와 '역사인식'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정부는 배상, 청구권 문제에 대해 △당사국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양국 간 평화조약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법적으로 해결)하였으며, △그때 개인의 청구권도 함께 처리했고, △국가 간 배상 등의 문제를 일괄 처리한 일본과 나치 범죄를 개인배상 형태로 처리한 독일과는 역사적 경위와 전후처리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전후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한 전후처리, 개별 평화조약에 의한 전후처리, 소련과의 전후처리, 중국과의 전후처리로 구분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타이완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한 전후처리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후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일본과의 사이에 전쟁상태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의 분리에 따른 재산·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해당지역 당국 간의 특별 취급이 규정되었다.[4조 (a)] / 한국은 1965년 일한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재산·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함과 함께 5억 달러의 경제협력(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을 실시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전쟁 대상국이 아니었으므로 배상 대상이 아니고 일본으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발생한 재산·청구권 문제로 처리할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둘째,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인식과 공식적으로 사죄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은 전후 역대 내각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그 사례로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 2005년 고이즈미 총리 담화, 2015년 아베 총리 담화를 제시하고 있다. 아베 총리 집권 이후 "한편,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미래 세대가 계속 사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 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러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 나아가 불행한 과거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1995년 8월 15일의 내각총리대신 담화를 비롯하여 그간 여러 기회를 통

해 명확히 표명해 왔습니다”⁶⁾라는 문구는 삭제되었다.

3. 일본 정부의 전후 배상과 식민지

1) 일본의 전후 배상

일본의 전후 배상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개별 국가 간 조약 등에 의해 처리되었는데 그 개요는 <표1>과 같다.

<표1> 일본의 전후 배상 개요⁷⁾

국가명	식민지 종주국	전후의 동향	대일 평화 조약	국교회복	배상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조인	강화조약에 의해 국교 회복	대일배상청구권 포기, 일본은 조약 당사국의 일본 해외 재산 처분권 인정, 일본은 적십자 국제위원 회에 연합국 포로에 대 한 보상으로 영국 화폐 로 환산한 450만 파운드 지불
한국	일본	45.8.15 독립 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청받지 못함	65.6.22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및경제협력 협정 조인	10년간 무상 3억달러 유 상 2억달러 제공, 민간차관 3억달러 제공
중국		49.10.1 중화인민 공화국 수립	초청받지 못함	72.9.29 일중공동성명 조인	대일배상청구권 포기

6) 한국 언론에서는 ‘お詫びの気持ち’를 사죄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일본정부가 한국사회가 환영할 ‘謝罪’라는 단어 대신에 ‘お詫びの気持ち’를 선택한 것은 일본 국내정서를 반영한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주한 일본대사관에 게재된 한국어 번역본에는 ‘お詫びの気持ち’가 ‘사죄’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핸드북책戰後補償編集委員会, 1992, 『ハンドブック戰後補償』(梨の木舎)부록 38-39쪽을 토대로 작성했다.

소련		52.4.28 일본, 남사할린, 치시마제도 의 권리, 청구권 포기	조인거부	56.10.19 일소공동선언 조인	대일배상청구권 포기
북한	일본	45.8.15 독립 48.9.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초청받지 못함	국교 미수립	일조국교정상화 교섭의 과제
타이완	일본		초청받지 못함	52.4.28 일화평화조약 조인(-72.9.29) 72.9.29 국교 단절	대일배상청구권 포기, 일본 군수시설 2000만 달러 분 수령
베트남	프랑스	45.9.2 베트남민주공 화국 독립선언 45.9.23 프랑스, 식민지주권의 부활을 선언 46.12.19 프랑스와 전쟁 개시 54.7 프랑스와 휴전 협정 조인	조인 (남베트남 정부)	59.5.13 배상, 엔차관협정 조인 (남베트남) (60.1.2 발효)	5년간 3900만달러 배상, 3년간 750만 달러 차관, 협정발효 5년후부터 910만달러 장기 대여
라오스	프랑스	49.7.19 라오스왕국 독립 (프랑스연합 내) 54.7.21 주네브 협정 조인, 프랑스 철퇴	조인	58.10.15 경제기술협력 협정 조인 (60.1.12 발효)	56.12.16 대일배상청구 권 포기 2년간 300만 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무상 제공
캄보디아	프랑스	53.11.9 캄보디아왕국 독립	조인	59.3.2 경제기술협력협 정조인(7.6 발효)	54.11.27 대일배상청구 권 포기 3년간 450만 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무상 제공
타이		45.8.16 42년의 미-영에 대한 선전포 고 무효 선언		55.7.9 특별엔협정 조인 (8.9 발효) 62.1.31 특별엔신협정 조인(5.9 발효)	5년간 54억엔 지불, 2800만달러 경제협력, 8년간 96억엔의 자본재, 역무 제공
버마	영국	48.1.4 미얀마연방 독립	참가거부	54.11.5 평화조약, 배상, 경제협력협정 조인 (55.4.16 발효) 63.3.29 재협정	10년간 2억달러의 생산 물과 역무 제공, 500만 달러 경제협력, 무상 1억 4000달러를 12년간 무상원조

말레이시아	영국	49.2.1 영국, 마라야연방 발족 57.8.31 마라야연방 독립 63.9.16 말레이시아 발족		67.9.21 일본과 말레이시아간의 협정(혈채협정) 조인(68.5.7 발효)	약 1700만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무상 제공 협의
싱가포르	영국	65.8.9 말레이시아에서 분리, 싱가포르공화국 독립		67.9.21 일본국과 싱가포르공화국과 협정(혈채협정)조인	1700만달러의 무상차관 제공
필리핀	미국	45.8.7 호세 라우엘, 필리핀 '독립'정부 해체를 선언 46.7.4 필리핀공화국 독립	조인	56.5.9 배상협정, 경제개발차관공문 조인(7.23 발효)	20년간 5억 5000만달러의 역무와 자본재 제공, 차관 2억 5000만달러 제공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45.8.17 인도네시아 공화국 독립선언 49.12.27 네덜란드, 주권 이양	조인하나 비준하지 않음	58.1.20 평화조약·배상협정 조인(4.15 발효)	12년간 2억 2308만 달러의 생산물과 역무 제공, 20년간 4억달러 차관 제공

일본의 전후 배상은 냉전을 배경으로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미국은 점령 초기에는 준엄한 대일배상정책을 취했다. 1946년 11월 공표된 폴리 사절단의 대일배상 최종보고서는 일본 국민이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공업시설을 철거하여 아시아 국가의 경제부흥에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⁸⁾ 그러나 냉전이 진행되고 일본이 미국의 안보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의 경제부흥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게 된다. 일본의 전쟁배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9.8 조인, 1952.4.28 발효)을 통해 처리되었는데, 그 특징으로 '관대한 강화'라는 점과 일본의 전쟁책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징벌적 성격의 거액배상이 아니라 일본이 지불 가능한 금액의 배상을 요구했고⁹⁾, ②현금배상 대신

8) 吉田裕, 1995, 『日本人の戦争観』, 岩波書店, 70쪽.

9)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14조[배상 및 재외 재산의 처리](a) 일본국은 전쟁중에 발생한 손해 및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을 지불해야함을 승인한다. 그러나 또한 존립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국의 자원은 일본국이 모든 前記의 손해 및 고통에 대해 완전한 배상을 행하고 또한 동시에 다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충분치 않다는 것을 승인한다.

설비철거에 의한 실물배상이나 역무배상을 기본으로 했으며, ③승전국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일본과의 교섭을 통해 배상액과 내용을 결정하는 등, 제1차 대전 후의 독일에 대한 배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¹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일본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중국과 한국은 참석하지 못했으며, 동남아시아 각국은 동아시아에서 압도적인 패권을 확립한 미국의 냉전정책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¹¹⁾ 평화조약과 양국 간의 협약에 의해 개인청구권을 포함한 배상과 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 간 협약에 의해 개인청구권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베리아 억류자가 일본 정부가 소련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소련으로부터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포기한 것은 외교적 보호권이자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일본 정부의 주장은 자국 전쟁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에 대한 입장과 상충된다.

더욱이 일본 사법부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인해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개인이 상대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02년 3월 28일 도쿄고등법원은 '강제징병·징용 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국제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도쿄고등법원도 2005년 4월 19일 '731부대·난징학살·무차별폭격 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제법상, 전쟁의 피해자 개인이 외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으며, '인도주의를 내세워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패전국과 그 국민에

10) 吉田裕, 앞의 책, 70쪽.

11) 인도네시아의 경우 스바르조 외상이 1951.9.15 요시다 시게루 총리와 면담 배상에 대한 확약을 얻어 조약에 조인했으나 비준을 얻지 못하고, 배상문제는 일본과의 개별교섭으로 넘어갔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로 참가한 당시 스바르조 외상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일본 점령의 책임을 묻고, 배상을 청구했다. "우리정부는 배상의 무거운 짐을 일본인의 양 어깨에 부과하여 일본 및 일본국민에게 부당한 곤란을 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도네시아 정부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점령기간 중의 일본국민 및 그 행동에 기초한 광범한 우리들의 현재의 여러 곤란, 결핍 및 제2차세계대전후의 재건 및 부흥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일본인에 의한 점령기간 중 인도네시아가 입은 손해는 이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교섭 당초에는 희생자 400만 명, 피해액 175억 달러로 추계되는 배상을 자본재, 서비스(역무)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는 일본의 GNP에 필적할 만한 액수로 이는 강화조약 14조 위반이라며 거부했다. 결국 당초 요구액의 1/80 수준인 2억 2308만 달러와 20년간 4억 달러의 유상자금 협력 등을 포함하여 총액 약 8억 94687만 달러를 제공받는 것으로 평화조약 및 배상협정에 조인했다.

게 부담을 부가하는 것으로 전후처리에 혼란과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동 소송의 1심 판결(1999.9.22)도 '전쟁피해에 대한 개인차원의 정의를 관철시키는 것이 오히려 분쟁의 불씨를 영원히 남김으로써 또 다시 전쟁상태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 보상은 전후 국가 간 평화우호조약 등에 의해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민간인과 식민지 출신자에 대한 '차별'

일본 정부의 자국 및 식민지 출신의 전쟁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개요는 <표2>와 같다.

<표2> 일본 정부의 전쟁 피해자 정책 개요

정책	실시시기 (연도)	신분		국적 조건			
		군인	민간	있음	없음	명시안함	
보상	은급법	1923-46	○		◎		
	군사부조법	1937-46	○		◎		
	전시재해보호법	1942-46		○	◎		
	전상 병자 · 전몰자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전상병자전몰자등원호법	1952-	○		○	
		구군인등유족에대한은급등의특례에관한법률	1953-	○		○	
		전몰자등의처에대한특별급부금지급법	1963-	○		○	
		전상병자특별원호법	1963-	○		○	
		전몰자등의유족에대한특별조금지급법	1965-	○		○	
		전상병자등의처에대한특별급부금지급법	1966-	○		○	
		전몰자의부모에대한특별급부금지급법	1967-	○		○	
		미귀환 자	미귀환자가족등원호법	1953-	○	○	○
	미귀환자에대한특별조치법		1959-	○	○	○	
	귀환자	귀환자급부금지급법	1957-		○	○	
		귀환자등에대한특별고부금지급에관한법률	1967-		○	○	
	피폭자	평화기념사업특별기금등에관한법률	1988-	○	○		○
원자폭탄피폭자의료등에관한법률		1957-94	○	○		○	
원자폭탄피폭자특별조치에관한법률		1968-94	○	○		○	
억류자	원자폭탄피폭자원호에관한법률	1994-	○	○		○	
	전후강제억류자에관련된문제에관한특별조치법안	2010-13	○		○		

구식민 출신자	타이완주민전몰자유족등에대한조금지급에 관한법률	1987-93	○		●		
	특정조금지급실시에관한법률(타이완)	1988-93	○		●		
	평화조약국적이탈자의전몰자유족등조금지급 에 관한법률(재일 한국인·조선인·타이완인)	2001-04	○		●		
추도	전국 전몰자 추도식	1952, 63-	○	○			○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념하는 날(8.15)	1982-	○	○			○
추도 시설	야스쿠니신사 합사(1945년 이후 종교법인)	1869-	○		◎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 건설, 추도식	1959-	○				○
	오기나와전(戰) 전몰자 묘원 건설	1979-	○	○			○
추도 · 현창	전몰자 서위서훈(叙位叙勳)	1964-	○		○		
	구(旧)훈장 연금자에 관한 특별조치	1967-	○		○		
	전몰자에 대한 사배(賜杯)	1970-	○		○		
	정례미전달훈기훈장 전달	1970-	○		○		
기 · 현 · 창 · 기 · 년 · 현 · 창 · 기 · 년	정기서위미전달위기 전달	1972-	○		○		
	해외 유골	해외 유골 수집(남방)	1952-	○			○
		해외 유골 수집(러시아)	1992-	○		○	
		해외 전몰자 위령비의 건설	1971-	○			○
	기념관	해외 격적지 위령 순례	1976-	○		○	
		소화관(유족)	1999-	○	○		○
		평화기념전시자료관(은급결격자, 억류자, 귀환자)	2000-	○	○		○
국립원폭사물자추도기념관		2002-	○	○		○	
쇼케이관(전상병자사료관)	2006-	○	○		○		

(주) ◎ : 식민지 국민도 대상, ● : 식민지 출신자만 대상

패전 이후 일본 정부는 전쟁에 동원된 일본인 군인·군속, 전상병자 및 전사자 유가족의 피해만을 보상했다. 전쟁 피해는 국민 모두가 감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으로,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도 전쟁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국가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던 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했다.¹²⁾ 이러한 정부의 전쟁 피해자 보상정책에 맞서 2007년 3월에는 도쿄공습 피해자와 유족 112명이, 2008년 12월에는 오사카공습 피해자와 유족 18명이 국가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으며 국가에 의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다.

12) 전후 일본의 전쟁희생자 보상 문제에 관한 연구로는 남상구, 2005, 「전후 일본의 전쟁희생자 '보상'에 관한 고찰 : 전상병자 전몰자유족 등 원호법과 은급법을 중심으로」(『日本歴史研究』 22)가 있다.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는 식민지가 독립한 이후에도 식민지 출신자를 내외 국민평등주의원칙에 따라 자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했으나¹³⁾, 일본은 식민지 출신 군인·군속 피해자의 경우는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배제했다. 배제의 이유는 식민지 출신자의 보상 문제는 양국 간 협약에 의해 해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한국 출신 일본인 군인·군속의 보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 서명(1965.6.22) 이전에 귀화한 한국 출신자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동등하게 보상을 실시했으나 서명 이후에는 귀화하더라도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일본에 영주하는 한국인과 타이완인이 국적조항에 의해 보상에서 배제된 문제에 대해 규약인권위원회는 자유권국제규약(1979년 조약 7호, 이른바 B규약)에 근거하여 ‘구 일본군에 종군한 한국·조선 및 타이완 출신자로 더 이상 일본 국적을 소유하지 않는 자가 연금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그 해결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 요구를 거부했다.¹⁴⁾ 2001년에는 ‘평화조약국적이탈자의전물자유족등조의금등지급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일본에 영주하는 한국인, 조선인, 타이완인에게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일한 피해를 입은 일본인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액수에 불과했다.

4.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인식

1) 일본 정부의 공적인 역사인식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는 무엇일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역사문제 Q&A’를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지난 대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떠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가?”인데, 답변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후 50년에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 전후 60년에 이른바 ‘고이즈미

13) 奥原敏雄, 1992, 『欧米諸国における戦争犠牲者の補償制度』, 『法学セミナー』(1992.8)52쪽.

14) 田中宏, 2003, 『林水木国家補償請求事件についての意見書』, 『龍谷大学経済学論集(民際学特集)』42(5), 31쪽.

담화’가 발표되었고, 2015년 8월 14일, 전후 70년을 맞이하여 내각총리대신 담화가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 아베 담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고 그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일본 정부는 총리나 관방장관 담화나 양국 간 공동성명의 형식을 빌려 정부의 역사인식을 표명해 왔는데, 주요 담화와 공동성명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역사문제 관련 일본 정부 담화·성명

연월일	주체	형식·사안·주요내용
1965.2.20	일본정부/한국정부	공동성명 <식민지 지배> ※ 양국 외교부장관 공동성명 양국 간의 긴 역사 중에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깊이 반성
1972.9.29	일본정부/중국정부	공동성명 <침략전쟁> 일본국이 전쟁으로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
1982.8.26	일본정부 관방장관	담화 <교과서 왜곡> 한국·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민에게 많은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을 깊이 자각
1985.8.14	일본정부 관방장관	담화 <과거사 전반> ※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8.15)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손해를 끼친 사실을 자각하고 깊이 반성
1992.7.6	일본정부 관방장관	담화 <일본군‘위안부’> 위안소 설치, 운영, 위안부 모집, 업자 감독에 정부가 관여한 사실 인정
1993.8.4	일본정부 관방장관	담화 <일본군‘위안부’> 위안소 설치·운영, 위안부 모집이 정부와 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실 및 모집에 관헌이 직접 가담한 사실 인정
1995.8.15	일본정부 총리	담화 <식민지 지배·침략전쟁> ※ 종전 50주년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1998.10.8	일본정부/한국정부	공동성명 <식민지 지배>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에 의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2001.8.13	일본정부 총리	담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8.14)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특히 아시아 근린제국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慘害와 고통을 강요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

2002.9.17	일본정부/ 북한정부	공동성명 <식민지 지배> 식민지 지배에 의해 조선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2005.8.13	일본정부 총리	담화 <식민지 지배·침략전쟁> ※ 종전 60주년 한국 사람들에게 식민지 지배와 침략행위에 의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 무라야마 담화의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삭제
2010.8.10	일본정부 총리	담화 <강제병합·식민지 지배> ※ 한국 강제병합 100년 식민지 지배에 의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나아가 한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의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음을 명기
2015.8.14	일본정부 총리	담화<침략전쟁> ※ 종전 70주년 1931년 이후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 표명했으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표현은 들어가지 않음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현재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발표한 담화다. 무라야마 담화의 문구를 보면 ‘국가정책을 그르쳐’라는 문구를 제외하면 그 이전에 발표되었던 문구를 답습하고 있다. 이것은 동담화가 1965년 이후 축적된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무라야마 담화는 모든 각료의 동의하에 발표되었는데, 당시 각료 중 자민당 소속이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통상산업장관(일본유족회 회장)을 비롯해 전부 8명이었다. 이들 중 1명이라도 담화에 반대를 하면 담화는 좌절될 수 있었다. 즉 무라야마 담화는 사회당인 무라야마 총리 개인의 역사인식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일본 정부 역사인식의 ‘총결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라야마 담화 이후 일본의 총리들은 동 담화의 문구를 원용하거나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사인식을 밝혔다. 정부차원의 담화나 성명도 무라야마 담화의 문구를 그대로 답습해 왔다.

하지만 2005년 고이즈미 총리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의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라는 문구를 삭제했고, 2015년 아베 총리가 발표한 담화는 사죄와 반성의 대상을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축소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음에도 불

구하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조사·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은 결과, 일본군 ‘위안부’나 난징대학살 등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인식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은 한국이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난지 6년이 지난 1951년이 되어서야 시작된다. 그러나 35년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양국의 역사인식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로 인해 교섭이 중단되기도 했다. 쟁점이 되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나 불법이냐는 것이었고, 둘째는 식민지 지배가 한국에 피해를 끼쳤느냐 발전에 기여했느냐는 것이었다. 한국은 일본의 지배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은 식민지 지배가 조약에 따른 합법 통치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15년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지만, 한일 양국은 아래와 같이 역사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고 국교정상화를 단행했다. 먼저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조약 제 2조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라고 각자에게 서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게 기술하는 것으로 봉합했다. ‘이미’의 시점을 한국은 조약 당시로, 일본은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때까지로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식민지 지배는 부당했지만 법적으로는 합법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인식을 보면, 1965년 1월 17일 한일협정 조인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은 “양국 간의 긴 역사 중에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깊이 반성한다”고 발언하고, 2월 20일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시이나 외상 공동성명에 “그와 같은 과거 관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깊이 반성하는 바라고 말했다”고 명기했다. 시이나 외상의 발언과 공동성명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1982년 8월 26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이 담화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1965년의 일한 공동성명에서 ‘과거의 관계는 유감으로 깊이 반성한다’는 인식을(중략) 밝혔는데 이것도 앞서 기술한 우리나라의 반성과 결의를 확인한 것으로서 현재도 이러한 인식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주장했듯이,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는 부당했다는 역사인식을 전제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시작했다.

식민지 지배라는 단어를 명기하고 사죄와 반성을 처음 표명한 것은 호소가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였다. 그는 1993년 8월 23일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가져온 것에 대해 새로이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1993년 11월 6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나라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조선반도 분들이 모국어 교육의 기회를 빼앗기거나 성명을 일본식으로 개명당하거나 중군위안부, 징용 등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체험한 것을 가해자로서 마음으로부터 반성하고 진사(陳謝)드리는 바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에 대해 언급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라고 명기했다. 2010년 8월 10일 발표된 민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담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식민지 피해를 명기하고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이에 다시금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했다. 일본 총리가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었다. 간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보다 진전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이 단명함에 따라 그 의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에 이어 등장한 아베 2차 내각은 아베 총리가 2015년 1월 5일 열린 연두기자회견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고, 또한 계승해 나갈 것’ 이라 발언하는 등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표명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 각료들은 무라야마 담화를 인용하면서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라는 문구를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꺼리고 있고, 아베 총리는 2013년부터 8월 15일 개최된 일본 정부 주최 전국전몰자추도식 추도사에서 1994년 무라야마 총리 때부터 언급되었고 2007년 1차 아베 내각에서도 언급했던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깊은 반성”을 표명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형해화(形骸化)하고 있다.¹⁵⁾ 더욱이 2015년 8월 14일 발표된 아베 총리 담화는 식민지 지배에 대해 “100여 년 전의 세계에는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의 광대한 식민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배경으로 식민지 지배의 물결은 19세기 아시아에도 밀려왔습니다. 그 위기감이 일본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입헌정치를 내세우며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일러전쟁은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계를 휩쓸었던 제1차 세계대전을 거쳐 민족 자결의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그간의 식민지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일본이 타이완과 한국을 무력으로 식민지화 한 것을 당시 국제사회의 대세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이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맺음말

일본의 전후처리와 역사인식 관련 쟁점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일본 정부는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인식은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2015년 아베 총리 담화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결여되는 등 최근 들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15) 아베정권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남상구, 2013,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한일관계사학회 제46집』)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4〉 식민지/전후처리와 역사인식 관련 쟁점 개요

구분	일본 정부 견해	비판적인 견해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보상을 했는가?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2국간 조약에 의해 배상 완료 - 식민지 지배는 배상 대상이 아님	- 미국 주도하에 일본에 유리한 전후배상 실시 -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보상하지 않음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 개인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 완료	- 반인도적인 범죄 및 불법적인 동원 관련 개인청구권은 해결되지 않음 -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청구 권리 유효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는 무엇인가?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는가?	- 1995년 무라야마 담화, 2005년 고이즈미 담화, 15년 아베 담화를 통해(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해 사죄와 반성 표명	-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인식 부침이 문제 - 아베 담화는 1930년대 이전의 식민지 지배는 정당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으로 평가받는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는 계승되고 있는가?	- 공식적으로는 모든 역대 정권이 계승을 표방	- 아베 2차 내각은 무라야마 담화의 무력화 시도 등 최근 들어 역행 현상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청구권 유효 발언과 2018년 3·1절 기념사에 나타나 있듯이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다. 하지만 앞에서 검토했듯이 일본 정부의 개인청구권에 대한 견해와 역행하는 역사인식을 보면 한일 간 견해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지배로 인해 발생한 피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일본의 전후처리와 역사인식을 논의할 때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독일이다. 독일은 피해 국가와 국민에게 제대로 사죄하고 보상을 했는데 일본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청산이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독일의 전후처리를 바람직한 사례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독일이 식민지 지배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관심, 식민지 지배를 당한 국가들이 독립 후 식민지 피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왔는지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

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세계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한일 간의 특수한 문제로 인식해 온 것에 기인한다. 식민지 문제를 한일 양국 간의 특수한 문제가 아닌 세계사적인 문제로 접근하면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인권법에 비추어본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미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국제인권법에 비추어본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미¹⁾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1. 지연된 정의 - 73년만의 판결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해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²⁾ 해방 직후 피해보상이 요구된 이래 73년 만에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가 한국 사법부에 의해 확정된 순간이었다. 2013년쯤에 끝났어야 할 재판이 이렇게 지연된 데에는 일본정부의 압력,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탓도 컸다. 이번 판결은 피해사실과 피해자들의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주어지지 않았던 긴 시간은 또 한편으로는 그 동안의 좌절과 망각의 역사도 돌아보게 한다. 국가가 나서지 않았기에 피해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다. 소송으로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법원에 호소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통하여 개별적인 배상문제를 넘어 소송을 제기안한 사람들을 포함한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1) 이 글은 2019년 8월 14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해방 74년, 강제동원 문제의 어제, 오늘, 내일』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

2)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표 1〉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과

일본	1997.12.24. 신천수와 여운택 오사카 지방 재판소 제소	2001.3.27. 기각(원고 패소)
	2001. 오사카 고등재판소 항소	2002.11.19. 기각(원고 패소)
	2002. 최고재판소 상고	2003.10.9. 기각 및 상고불수리(원고 패소)
한국	2005.2.28. 신천수, 여운택, 이춘식, 김규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소	2008.4.3. 기각
	2008.4.25. 서울고등법원 항소	2009.7.16. 기각
	2009.8.5. 대법원 상고	2012.5.24. 파기환송(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2013.7.10. 일부 인용(원고 승소)
	대법원 재상고심	2018.10.30. 상고 기각(원고 승소)

〈표2〉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과

일본	1995.12.11. 박창환 외 45명 히로시마 지방 재판소 제소	1999.3.25. 기각(원고 패소)
	1999.4.2.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항소	2005.1.19. 기각(원고 패소)
	2005.1.27.과 2.1. 최고재판소 상고	2007.11.1. 기각(원고 패소)
한국	2000.5.1. 박창환 외 4인의 피해자와 유족 부산지방법원 제소	2007.2.2. 기각(원고 패소)
	2007.3.6. 부산고등법원 항소	2009.2.3. 기각(원고 패소)
	2009.3.16. 대법원 상고	2012.5.24. 파기환송(원고 승소)
	부산고등법원 파기환송심	2013.7.30. 일부 인용((원고 승소)
	대법원 재상고심	2018.11.29. 상고 기각(원고 승소) ³⁾

판결이 난 지 11개월이 지난 오늘 피고인 일본기업들은 아직도 대법원이 명한 위 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원고 측의 협의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하기 위하여 판결의 강제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현금화조치에 반발하고 급기야는 수출규제를 강화하여 문제는 바야흐로 경제, 안보분야로 번지고 있다.

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나아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동아시아의 정세는 19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미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⁴⁾ 이 글은 국제인권법과 관련된 함의를 살피고자 한다.

2. 대법원, 피해자의 인권을 인정하다

강제동원 문제를 포함한 대일과거사 재판은 해방이후 간간히 있어왔지만 본격적인 소송운동으로 발전한 계기는 1980년대 후반 냉전의 종식과 한국의 민주화였다.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도 홀로코스트, 강제노동 등 나치독일의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문제가 대두되었다. 한국인 피해자들은 일본 법정의 문부터 두드리기 시작했다. 1991년 12월 6일 김학순 등 한국인 구‘위안부’와 군인, 군속(군무원), 유족 등 40명이 도쿄지방법원에 ‘아시아·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키시마호 폭침사건, 사할린한인, BC급 전범, 근로정신대, 원폭피해자, 피폭 징용공, 야스쿠니합사 등 일본 국가와 기업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소송들이 줄을 이었다.⁵⁾ 한국인 이외에 연합군포로들과 중국인 ‘위안부’와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재판도 있었다.⁶⁾

더욱이 강제동원문제는 ‘위안부’문제와 함께 국제기구에도 제기되었다.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정식 명칭은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CEACR)는 일본이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게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⁷⁾ 2015년에는 일본이 강제노동의 현

4) 예컨대 김민웅,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 『프레시안』, 2019.8.8.-; 김창록,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국면 점검」 연재기사, 『오마이뉴스』, 2019.7.30.-.

5) 조시현, 2019, 「청산되지 않은 대일과거사 문제와 피해자들의 인권」, 제주4·3 희생자 유족회,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 공동주최,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자료집, 39쪽.

6) 한국어와 일어로 작성된 재판 목록은 일본의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변호사의 홈페이지 〈법률사무실의 아카이브〉 <http://justice.skr.jp/> 참조. 또한 국사편찬위원회·한일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위원회 편, 『대일과거청산소송자료집』, 1~8권[원폭피해자 광귀훈, 후지코시 강제동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소송기록], 2005; 민족문제연구소, 『대일 과거청산 소송사례 연구 - 소송사례 해제·소송판례집』, (2006년 일제하 단체·인물 연구사업 연구결과보고서) 참조.

7)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3rd Session 1996, Report III (Part 4A), p. 85 등.

장이기도 했던 메이지 시대의 산업시설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을 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역사의 전모’(full history)를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⁸⁾

이러한 법정투쟁과 국제활동에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 시민들 사이의 국제적인 연대가 주효하였다. 노구를 이끌고 특히 가깝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이역 땅, 전범국가 일본에 다시 가서 벌여야 하는 소송은 힘겹기만 하였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최종판단을 받아보기까지 장장 10년을 기다려야했던 외로운 싸움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원고들이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재판을 이어야했다. 지금까지 한국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대일과거사 재판은 진전된 하급심 판결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 원고 패소로 귀결되었고, 화해가 성립한 경우는 예외에 속한다. 원고들의 호소에 눈과 귀를 닫는 논리는 구구하였다: 개인은 국제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국가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가는 외국의 법정에 동의 없이 서지 않는다,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 소송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 청구권협정으로 재판을 제기할 권능을 잃었다 등등.⁹⁾

그런데 강제동원 피해문제를 꼭 일본 법원에 가서 제기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1999년부터는 미국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년에는 장완익, 최봉태 변호사 등의 주도로 한국법원에 일본기업인 미쓰비시에 대한 소장이 제출되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 한국에서는 ‘위안부’문제를 비롯하여 대일과거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도 가중되었다. 2004년에 제정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실시되었다.¹⁰⁾ 특히 미쓰비시 소송으로 촉발된 2005년의 한일회담 문서공개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민관공동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이라고 한 바 있다.¹¹⁾ 2011년 ‘위안부’피해자와 원폭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

8) 김민철, 김승은 외, 2017,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생각정원, 96쪽.

9) 예컨대 조시현, 2018, 「국가면제와 피해자의 인권에 관한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판결 제238호의 해제와 변역」,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 전시 성폭력 실태기록, 학술행사홍보 및 국제협력활동 사업』, 여성가족부, 735쪽.

10) 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6.

1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05.8.26.;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 대책기획단 활동 백서』, 2007.

정¹²⁾ 그리고 2012년과 2018년의 대법원판결은 이러한 흐름의 연속선 위에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마침내 한국의 사법부에 의하여 처음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일본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래 20여 년 만에 비로소 피해자들의 배상을 받을 권리가 확인된 것이다. 이는 일본기업의 강제동원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이 “사상 처음”,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세계사를 다시 쓴 판결이었다.

3. ‘불법한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불법행위’

‘반인도적 불법행위’

일본과 한국에서의 소송은 원고인 피해자들이 일제의 강제동원에 가담한 일본국과 당시 일본제철(이후 신일본제철, 신일본주금, 일본제철의 순서로 명칭변경)과 미쓰비시(현 미쓰비시중공업)를 피고로 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을 근거로 이루어졌다고 정리해볼 수 있다. 대법원은 우선 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한국의 민법을 근거로 하여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문제로 다루었다. 즉 불법행위가 성립하여야 배상책임이 생긴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과 일본 판결의 결정적인 차이는 불법행위의 인정 여부에 달려있다.

한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본 민법 제709조와 제710조도 유사한 내용임)

12) 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위안부 피해자; 같은 날 2008헌마648 결정(원폭피해자)).

<2018년 신일철주금에 대한 대법원판결>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라 한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불법행위 앞에 “반인도적인”이라는 수사를 붙이고 있다. 이 말은 앞서 언급한 2007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비롯되기는 하지만 조금 후에 살펴볼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또는 반인도적 범죄)와 연관되어있음이 분명하다. 2011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좀 특별한 불법행위임에 틀림없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강제동원으로 입은 고통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시키고 있다. 강제동원의 배경과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 일제가 한 행위의 위법성이 더욱 뚜렷해졌다.¹³⁾

13) 2012년 대법원 판결: “그렇다면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신일본제철), 대법원 같은 날 2009다22549 판결).

<2018년 대법원 판결, 대법관 김재형과 김선수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채 온갖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인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그 실상을 조사·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일 수도 있다. 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책임은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불법한 식민지배’

이와 같이 일제 ‘강점’ 또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강제동원을 가능하게 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들에게 적용한 일본판결을 승인하지 않았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언급한 헌법 전문을 근거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따라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식민지배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살펴보면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에 이어 2010년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하였지만 이를 불법하다고 까지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아베총리는 2015년 종전70주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하고, 모든 민족 자결의 권리가 존중되는 세계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러일전쟁은 식민지배 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라고 하여 모순된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이와 같이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은 대한제국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합국들은 강제동원이 한창 이루어지던 시점인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선언에서 당시 조선을 ‘노예상태’에 있다고 파악하고 독립을 약속하였다. 또한 연합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의 전쟁책임자들과 전쟁범죄자들을 극동 국제 군사법정과 연합국 군사법정에 세우고, 침략범죄인 평화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

(가) 평화에 반한 죄: 즉 선전을 포고하거나 포고하지 않은 침략전쟁, 또는 국제법, 조약, 협정 또는 보장에 위반하는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수행, 또는 이러한 각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계획 또는 모의에의 참가;

(나) 통상의 전쟁범죄: 즉 전쟁의 법규 또는 관례의 위반;

(다) 인도에 반한 죄: 즉 전쟁이 있기 전 또는 전쟁 중에 저질러진 살육, 섬멸, 노예적 학사, 추방, 기타의 비인도적 행위 또는 범행지의 국내법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한 범죄[즉 평화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이에 관련하여 행하여진 정치적 또는 인종적 이유에 기한 박해.

그러나 연합국에 의한 전범재판에서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나 강제동원에 대한 단죄는 없었다.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역시 배상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독일과 달리 일본은 여태까지 스스로 자국의 법정에서 전범을 처벌한 적도, 배상판결을 내린 일도 없다.¹⁴⁾ 한국에서도 전범법정이 세워지지 않았고, 반민족 행위 처벌도 실패하였다. 1965년의 한일 사이의 기본관계조약이나 청구권/경제협력 협정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배상도, 식민지배나 식민지배하의 불법행위 또는 식민지 범죄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역사가 이렇게 불처벌과 무책임 쪽으로 흘렀다고 하여 전쟁, 식민주의, 반인도적 행위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원칙으로 등장하고 유엔헌장에도 담긴 민족자결주의는 3·1운동의 민족적 열망으로 표출되고 독립의 기틀이 되었다. 세계를 둘러보면 제2차 대전 후에도 억압된 피지배 민족들과 민중들은 모든 형태의 압제에 저항하고 있으며 빼앗겼던 법과 권리를 차례 차례 확인해나가고 있다.¹⁵⁾ 대표적으로 2001년 9월 8일 유엔의 더반(Durban) 선언을 들 수 있다.¹⁶⁾ 이 선언에서 식민주의의 고통과 피해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이로 인

14) 조시현, 2016, 「한일 과거청산과 식민지 범죄」, 『문화연구』 4권 1호, 153쪽.

15) 조시현, 2014,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 『법사학연구』 제49호, 119쪽 참조.

16)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Durban, South Africa, 2001.

해 야기된 노예제도, 노예무역, 인종격리, 제노사이드, 인종적, 종족적 그리고 기타 이유에 의한 특정 집단에 대한 박해가 “인도에 반하는 죄”로 인정되었다. 강조해야 할 것은 2001년이라는 시점에, 그제서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식민종주국이었던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을 통해 그 동안 있어왔던 법의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더반 선언

14. 우리는 식민주의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와 이들과 관련된 불관용을 야기했다는 것을 공인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과 아프리카 출신자들 그리고 아시아 출신자와 선주민들이 식민주의의 피해자였으며 계속하여 그 결과들의 피해자임을 공인한다. 우리는 식민주의로 인한 고통을 인정하며 식민주의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이 비탄되어야 하고 그의 재발이 방지되어야 함을 단언한다. 우리는 나아가 오늘날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구조들과 관행들이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증대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였음에 유감을 표명한다.

4. 강제동원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인권의 측면에서 식민주의 비판은 식민지배와 그에 수반된 인권침해에 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제인권규약 제1조는 민족자결권 또는 자기결정의 권리(right of self-determination)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자신들의 나라를 가질 것인지, 어떤 나라를 가질지 등 모든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외세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처벌하려고 한 뉘른베르크나 도쿄 전범법정 현장들은 그 때까지 인류의 법적 확신을 담은 것이다. 또한 전쟁의 과거를 반성하며 미래 사회를 설계한 1948년 세계인권선언 역시 그 때까지 지켜져야만 했던 인권의 목록을 확인하고 전후로 이어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인권이 있었다는 것은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금지한 1904년 이래의 국제협

약들,¹⁷⁾ 1926년 국제연맹의 노예철폐협약¹⁸⁾과 1930년 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덧붙여 오늘날 무력행사 금지, 노예제·해적·제노사이드(집단살해)·전쟁범죄·인도에 반한 죄·고문·인종차별 금지, 민족자결권 존중과 같은 원칙들은 국제법상 조약을 통해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른바 강제규범(jus cogens)으로 여겨지고, 또한 대세적(erga omnes) 의무로서 다른 모든 국가들도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한다. 최근 일제의 강제동원은 이러한 강행규범 위반행위로도 평가되고 있다.¹⁹⁾

이처럼 강제동원과 같은 식민지배 하의 불법행위는 국내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이 확인한 거의 모든 권리들이 박탈되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인권침해의 피해자이며 피해구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²⁰⁾

세계인권선언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이 부여하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국내법정에 의해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후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규범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특히 2005년 12월 16일 유엔 총회는 ‘중대한 국제인권법 침해와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의 피해자들을 위한 권리구제와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을 채택하였다.²¹⁾ 이른바

17) 조시현, 2014,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의 발달과정」, 『법과 사회』 제46호, 233쪽; 같은 이, 2014,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협정」, 『법학논고』(경북대) 제47집, 467쪽; 같은 이, 2014,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10년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약」, 『법학연구』(전북대) 통권 제42집, 475쪽.

18) 예컨대 Renee C. Redman, 1994,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Right to Be Free From Enslavement: The First Human Rights to Be Recognize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hicago-Kent Law Review*, vol. 70, p. 759; 오승진, 2012, 「국제법상 노예제의 금지 - 위안부와 관련하여 -」, 『법학논총』(단국대학교) 제36권 제2호, 259쪽.

19) 예컨대 장병호, 「조약과 국제적 강행규범 충돌시 '조약은 무효' 116개국 가입한 '비엔나 협약' 명시 ... 강제징용은 반인도 범죄·노예노동 금지 위반」, 『내일신문』, 2019.8.7.; 정현상, 「국제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무역규제 풀려면 日 청구권 중재 공론화해야"」, 『동아일보』, 2019.8.16.(인터넷 판).

20) 강제동원 관련 한국 위원회들의 활동에 있어서 강제동원의 불법성 또는 규범적 측면에서의 천착이 부족하였다고 여겨진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공세에 비추어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21)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 General Assembly, A/RES/60/147, 16 December 2005.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재승, 2010, 『국가범죄 -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엘피, 674쪽; 이주영·백범석, 2018, 「국제인권법상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중심적 접근(victim-centered approach)」, 『국제법학회논총』 제63권 제1호(통권 제148호), 163, 193쪽 이하 참조.

‘피해자 권리장전’이다. 이는 한마디로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 입각하여 중대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의 권리와 이를 존중해야하는 모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005년 피해자 권리장전

1.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존중을 보장하고, 이행할 의무 ...
2. ... 국가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의 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국내법을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와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a)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규범을 국내법으로 만들거나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국내 법 체계에서 이행할 것;
 - (b) 공정하고 실효적이며 신속하게 정의에 대한 접근(access to justice)을 제공하는 적절하고 실효적인 입법·행정절차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
 - (c) ... 배상/피해회복(reparation)을 포함하여 적정하고 실효적이고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수단들을 제공할 것;
 - (d) 자국의 국내법이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자국의 국제의무가 요구하는 바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

이러한 국가의 의무에 상응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는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할 인권을 가진다. 특히 배상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원상회복, 금전 배상(compensation), 재할, 만족(satisfaction), 재발방지의 보증에 관한 권리들을 포함된다. 여기에서 만족을 위한 조치에는 ① 지속적인 침해의 중단, ② 진실 공개, ③ 실종 피해자의 소재 파악, 유해 조사와 발굴, 피해자의 의사와 가족들의 문화적 관례에 따른 장례,²²⁾ ④ 피해자의 존엄, 명예, 권리 회복을 위한 공식 선언이나 사법판결, ⑤ 사실인정과 책임의 수락을 포함하는 공적 사과, ⑥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 ⑦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⑧ 각급 교육훈련자료에 침해행위에 대한 정확한 기재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피해자의 권리는 금전배상에 그치지 않는다.

22) 조시현, 2018, 「조선 출신 군인군속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문제와 국제법」, 『야스쿠니 문제의 UN 인권기구 제기를 위한 국제회의: 국제인권의 시점에서 야스쿠니를 보다 III』 자료집, 42쪽; 같은 이, 2018, 「국제인권규범과 유골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 실태 및 해결방안 모색』 자료집, 47쪽; 같은 이, 2007,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민주법학』 제34권 34호, 229쪽.

5. 맺으며

강제동원문제는 대일과거사문제 또는 역사문제라고 말해지기도 하지만 이럴 경우 피해자문제를 부각시키지 못하는 점도 있다. 피해자들이 엄연히 살아있고 이들을 옥죄었던 장치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제법상 강제동원은 명백하게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강제동원문제는 법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 사이의 민사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인권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국한되지 않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배상과 피해회복의 권리를 포함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당시 제국주의의 법 아래에서 이루어진 합법한 행위라고 강변하면서 문제의 프레임을 ‘징용공’문제에서 ‘구조선반도출신 노동자의 문제’로 바꾸고 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대법원 판결을 청구권협정을 들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법적인 사죄와 배상은 봉쇄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는 한일회담(1951-1965)의 테이블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청구권이라는 재산법상의 개념을 뛰어넘어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금전배상만이 아닌 진실, 정의, 재발방지 등 다양한 해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²³⁾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문제를 비롯한 많은 과거사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일본과 한국의 소송들에 대해 “사인간의 재판”이라고 하며 방관하는 자세를 취해왔다.²⁴⁾ 중국인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판결에 관하여 강력하게 항의해온

23) 청구권협정의 해석 문제는 이 글의 범위를 넘지만 대법원 판결의 관련 논의와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협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는 판결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국제인권법의 원칙들은 판결의 결론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24) 예컨대 이대성, 「"근로정신대 진상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일제강점기 인권피해문제 대책포럼, 나고야 미쓰비시근로정신대 소송관련 기자회견 개최」, 『아산 투데이.com』, 2013.7.18, http://www.asantoday.com/sub_read.html?uid=36208.

중국정부의 태도와 대비된다.²⁵⁾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012년 대법원판결 그리고 2018년의 대법원 판결들을 통하여 확인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 국민들의 침해된 인권회복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2018년의 대법원판결은 그 동안의 부정의와 결별하고 무책임의 사슬을 끊는 새로운 시작을 표기한다.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강제동원의 진실과 불법성을 일본과 국제사회가 인정하기까지 또 다른 긴 싸움을 벌여나가야 한다.

25) 중국정부의 반응은 중국인 ‘위안부’와 니시마츠(西松) 건설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등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2007년 4월 27일 의 기각판결에 대한 것이었다. 중국의 외교부는 이 판결이 ‘자의적인’ 이고 ‘불법무효’(illegal and invalid)라고 비난하였다(中国外交部報道官「西松建設 訴訟判決に関するコメント」, <http://osaka.china-consulate.org/jpn/fyrth/t315520.htm>. 또한 Norimitsu Onishi, Japan Court Rules Against Sex Slaves and Laborers, New York Times, Apr. 28, 2007, <https://www.nytimes.com/2007/04/28/world/asia/28japan.html>).

한국에도 알려진 니시마츠 판결은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것으로 중국인의 대일청구권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전쟁배상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중일 공동선언 제5항에 따라 “재판상 소구하는 권능을 잃었다”고 해석하는 한편 “니시마츠가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 기대된다”고 한 것을 말한다(最高裁 平成18年(才) 第387号. 平成19年[2007] 4月27日 第二小法廷 決定, <http://www.courts.go.jp/hanrei/pdf/20070427134258.pdf>). 2007년의 중국인 ‘위안부’ 등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일본에서 말하는 전후체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전후보상문제의 ‘틀거리(framework)’로 상정하고, 중일 공동선언을 실질적 또는 사실상의 평화조약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전제로 재판소는 중일공동선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하여 일본국에 대한 전쟁배상의 청구를 포기할 것을 선언한다”고 한 것을 중국인들의 개인청구권까지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最高裁 平成18年(才) 第471号, 平成19年[2007] 4月27日 第二小法廷 決定, <http://www.courts.go.jp/hanrei/pdf/20070427134258.pdf> 와 <http://www.courts.go.jp/hanrei/pdf/20070427165434.pdf>; <http://www.courts.go.jp/english/judgments/text/2007.04.27.-2004.-Ju-.No..1658.html> (영역)). 그 후 2009년 10월 27일 중국인 강제노동피해자와 니시마츠 건설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회사 측의 사죄 의사의 표명과 피해자들을 위한 신탁기금 설치 등이 피해자 측과 합의된 바 있다.

니시마츠 판결은 피해자들의 청구권에서 소구권능은 사라졌지만 실제적인 권리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 화해로 나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이 판결로 피해자들이 재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가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이들의 청구권은 일종의 자연채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완전한 권리일 따름으로 법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일본 사법부의 논리는 나고야의 미쓰비시 공장에서 근로정신대로 강제연행/강제노동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엮음, 『나고야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일본 소송 자료집』, 선인, 2016. 한편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원고들이 1997년 12월 24일 제기한 일본 소송에서 2002년 11월 19일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고, 최고재판소는 2003년 10월 9일 결정으로 상고를 수리하지 않고 기각하였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

토론문

서호철(한국학중앙연구원)

조윤수(동북아역사재단)

「일본의 전후처리와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인식」

토론문

서호철(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인권법에 비추어본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미」 토론문

조윤수(동북아역사재단)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1년을 시작으로 일본에 전후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내 재판에서 모두 패배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재판에서 기각당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느꼈을 좌절감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에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의 의의가 크다는 조시현 선생님의 발표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반인도적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양국 간 청구권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보상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도 논쟁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법학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1. 개별 배상을 넘어 소송에 제기한 사람들을 포함한 강제동원 문제의 전체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강제동원을 국제인권법적인 입장에서 분석하셨고 강제동원 문제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강제동원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한국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판결문에서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주체가 일본 기업이 되고 있는데 일본 군‘위안부’에서는 명확히 주체가 일본 정부입니다. 국제법에서 ‘반인도적 (against humanity)’라는 용어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서 비롯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즉 국가 범죄에만 국한 되어서 쓰인다고 하는데 일본제철은 민간기업으로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은 징용자들의 미수금 등을 요구하였고 그것이 8항목이다. 그러면 청구권 협정에서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어떤 논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3. 1910년 강제병합은 당연히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우리는 주장하는데 어떤 국제법 학자들 중에서는 한국 헌법 상 당연히 불법이나 국제법상 불법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Memo _____

_____ Memo

Memo _____

_____ Memo

Memo
